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 지세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에 대한 디자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색각이상자용 지도 제작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 대한민국주변도 추가(안 제1조, 제2조)
- 대한민국주변도의 도곽구성, 축소편집, 표시대상, 도로, 철도 표시 방법 조문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21조)
- 대한민국주변도에서 표현되는 육지 및 바다의 음영기복 표현, 경계 표시, 글자의 종류 명시(안 제54조, 제58조, 제63조)
- 지명의 주기 표기원칙 신설(안 제61조)
- 대한민국주변도의 주기 취사선택, 난외사항 정의 및 구성요소 신설, 지리좌표 표기방법 명시(안 제68조,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도곽에 대한 디자인 개선사항 반영(안 제104조)
-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도엽명, 편집·수정·인쇄년도, 축척 표시방법 명시(안 제109조, 제115조, 제116조)

-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9조)
 -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연장
- 색각이상자용 지도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별표 3, 4, 5)
 -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적·녹·청색약맹 색각 지도 제작을 위한 색상값 등 설정
- 시행일 변경(부칙 안 제1조)
 - 색각이상자용 지도 관련 사항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일과 통일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및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를 대상으로”를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로 한다.

제2조 제3항 “이다”를 “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 제4항을 “④ “대한민국주변도”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국의 위치, 지세, 교통망 및 행정구역 등의 공간을 축소하고 정보의 판독이 용이하도록 1장으로 제작한 지도를 말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의”로 한다.

제4조 제1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별표 4와”를 “별표 5와”로 한다.

제6조 제2항 “이어도종합해상과학기지를 포함한”를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포함한”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을 “③ 대한민국주변도의 도곽구성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도곽을 기준으로 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제3항을 “③ 대한민국주변도는 대한민국전도 및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축척과 도식기준에 맞도록 단순화 및 기호화작업을 통하여 축소편집을 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제2항의 “가.”를 “1.”로, “나”를 “2.”로, “다.”를 “3.”으로, “라.”를 “4.”로, “마.”를 “5.”로, “사.”를 “6.”로, “아.”를 “7.”로 한다.

제8조 제3항을 “③ 대한민국주변도에 표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2. 경계 3. 도시 4. 지형 5. 교통 6. 주기”로 신설한다.

제8조 “③”을 “④”로, “④”를 “⑤”로, “⑤”를 “⑥”로, “⑥”을 “⑦”로 한다.

제8조 제4항 “사항의”를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로 하고, “가.”를 “1.”로, “나.”를 “2.”로, “라.”를 “3.”로, “마.”를 “4.”로, “바.”를 “5.”로 하며, “다. 구조물”을 삭제한다.

제13조 제4항을 “④ 대한민국주변도는 주요 도시간 주요 도로를 표시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제2항의 “일반철도, 특수철도로”를 “일반철도로”로 하고, “복선, 협궤 등으로”를 “복선 등으로”로 한다.

제20조 제4호를 삭제하고 “5.”를 “4.”로 한다.

제21조 제3항을 “③ 대한민국주변도는 주요 도시간의 연결철도를 표시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제2항의 “일반교량은”을 “지세도의 일반교량은”으로 하고, 제3항의 “철교는”을 “지세도의 철교는”으로 한다.

제34조 제3항의 “별표3에 의한다”를 “별표 4를 따른다”로 한다.

제35조 “피복지를 별표3 기호표기기준에 의한다.”를 “피복지는 별표 4 기호표기기준을 따른다.”로 한다.

제37조 “별표 3”을 “별표 4를”로 한다.

제40조 “주요건물에 대해서는”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건물은”으로 하며, “가.”를 “1.”로, “나.”를 “2.”로 한다.

제50조 제1항 “별표3과”를 “별표 4와”로, 제2항 “별표3에 의한다”를 “별표 4를 따른다”로 한다.

제53조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54조 제2항의 “대한민국전도에서 표현되는 등고선은 100m, 200m, 500m, 1,000m, 1,500m, 2,000m, 2,500m로 구분하고, 등심선은 간조시의 최저 해수면을 기준한 것으로 20m, 50m, 100m, 200m, 1,000m, 2,000m로 구분하여”을 “육지의 색상은 0m, 100m, 500m, 1,000m, 1,500m, 1,500m 이상으로 구분하고, 해저의 색상은 간조시의 최저 해수면을 기준한 것으로 0m, 50m, 100m, 200m, 500m, 1,000m, 2,000m, 3,000m, 3,000m 이하로 구분하여”으로 한다.

제54조 제3항을 “③ 대한민국주변도에서 표현되는 육지의 색상은 높이에 따라 10단계(해면하 지역 및 0~150m, 150~500m, 500~800m, 800~1,000m, 1,000~1,300m, 1,300~1,700m, 1,700~2,000m, 2,000~2,500m, 2,500~3,000m, 3,000m 이상)로 구분하되, 저지대는 녹색계통으로 중·고지대는 갈색계통으로 구분하는 등 음영기복을 나타내도록 한다. 해저의

색상은 8단계(0~500m, 500~1,000m, 1,000~2,000m, 2,000~3,000m, 3,000~4,000m, 4,000~5,000m, 5,000~6,000m, 6,000m 이하)로 구분하되, 육지에 가까운 수심이 낮은 곳은 연한 청색으로 수심이 깊은 곳은 짙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수심의 차이에 따라 색상의 농도를 조절하여 표시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54조 제4항의 “지세도와 대한민국전도에서 지표면의 고도에 따른”을 “지표면의 고도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58조 제1항 “경계는”을 “지세도의 경계는”으로 하고, “도서 소속 표시를 포함한다. 단, 대한민국전도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의 경계만 표시한다.”를 “도서소속 표시, 국가경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8조 제2항을 “대한민국전도의 경계는 국가경계,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의 경계를 표시하며 우리나라 국가경계는 헌법에 의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제3항을 “대한민국주변도의 경계는 국가경계, 주·성·도경계를 표시하며, 분쟁지역의 경계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61조를 “제61조(주기의 표기원칙) ① 지명의 로마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외국의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표기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현행 제61조 “별표2에 의한다”를 “제62조 별표 3을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62조 “지세도에는 한글은 지명 및 기타 고유명칭에 사용하고 숫자는 삼각점, 표고점, 등고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하며, 대한민국전도에서는 한글은 지명 및 기타 고유명칭에 사용하고 숫자는 표고점, 등고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한다.”를 “제63조 지세도 및 대한민국전도에는 한글은 지명 및 기타 고유명칭에 사용하고 숫자는 삼각점, 표고점, 등고수

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하며, 대한민국주변도에서는 한글은 국가명, 지명 및 기타 고유명칭에 사용하고 숫자는 산높이, 항로 등에 사용한다.”로 한다.

“제63조”를 “제64조”로, “제64조”를 “제65조”로, “제65조”를 “제66조”로, “제66조”를 “제67조”로 한다.

현행 제67조의 “행정구역 고유 명칭은 모두 표기하고”를 제68조 “① 지세도 및 대한민국전도에 표기되는 행정구역 고유 명칭은 모두 표기하고,”로 하고, 제68조 제2항을 “② 대한민국주변도에 표시할 국가명, 주요 도시명, 해, 강, 호, 만, 반도, 섬 명칭 등 자연 및 인공 지형지물의 대상은 인지도, 가시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현행 제68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6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표기한다.”로 한다.

현행 제70조 제3항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71조 제3항 “별표 2를 따른다”로 한다.

“제68조”를 “제69조”로, “제69조”를 “제70조”로, “제70조”를 “제71조”로, “제71조”를 “제72조”로, “제72조”를 “제73조”로 한다.

현행 제73조의 “별표의”를 “별표 3의”,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현행 제74조 제1항의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75조 제1항에 “별표 3을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74조 제2항의 “일반원칙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75조 제2항에 “일반원칙을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74조 제4항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를 개정안 제75조 제4항에 “일

반원칙에 따라”로 한다.

현행 제75조 제2항 “일반원칙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76조 제2항 “일반원칙을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75조 제4항 “일반원칙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76조 제4항 “일반원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74조”를 “제75조”로, “제75조”를 “제76조”로, “제76조”를 “제77조”로 한다.

현행 제77조의 “별표 2”를 개정안 제78조 “별표 3”으로 한다.

현행 제78조의 “별표 2”를 개정안 제79조 “별표 3”으로 한다.

현행 제79조 제3항의 “별표 2와”를 개정안 제80조 제3항 “별표 3과”로 한다.

현행 제80조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81조 “별표 3을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81조 제2항의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82조 제2항의 “별표 3을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82조 제2항의 “일반원칙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83조 제2항 “일반원칙을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82조 제3항의 “별표 2에 의하며”를 개정안 제83조 제3항 “별표 3을 따르며”로 한다.

현행 제83조 제3항의 “별표 2와”를 개정안 제84조 제3항에 “별표 3과”로 한다.

현행 “제84조(갑·곶)”을 개정안 “제85조(곶·포)”로 하고, “별표 2에 의한다”를 “별표 3을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86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3을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86조 제1항 “별표 2와”를 개정안 제87조 제1항 “별표 3과”로 하고, 제2항 “별표 2에 의한다”를 “별표 3을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87조 제2항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88조 제2항 “별표 3을 따른다”로 한다.

“제88조”를 “제89조”로, “제89조”를 “제90조”로, “제90조”를 “제91조”로, “제91조”를 “제92조”로, “제92조”를 “제93조”로, “제93조”를 “제94조”로, “제94조”를 “제95조”로, “제95조”를 “제96조”로, “제96조”를 “제97조”로 한다.

현행 제97조 “①, ②, ③, ④”을 개정안 제98조 “1., 2., 3., 4.”로 한다.

“제98조”를 “제99조”로, “제99조”를 “제100조”로 한다.

현행 제100조(난외사항의 정의) “난외사항은 지도 도곽의 표시와 지도 구성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말하며, 도곽 주위에 표시하여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를 개정안 제101조(난외사항 정의) ① 난외사항은 별표 5에 따라 지도 도곽의 표시와 지도 구성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말한다. ② 지세도는 도곽 주위에 표시하고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 ③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는 도곽 내에 표시하고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로 한다.

현행 제101조를 개정안 제102조로 하고,
현행 제101조 제2항의 “난외사항으로”를 “지세도의 난외사항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호와 같다”로 하고, “가.”를 “1.”로, “나.”를 “2.”로, “다.”를 “3.”으로, “라.”를 “4.”로, “마.”를 “5.”로, “바.”를 “6.”로, “사.”를 “7.”로, “아.”를 “8.”로, “자.”를 “9.”로, “차.”를 “10.”로, “카.”를 “11.”로, “타.”를 “12.”로, “파.”를 “13.”로, “하.”를 “14.”로 한다.

개정안 제102조 제3항을 “③ 대한민국전도의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엽명 2. 도곽(내도곽, 외도곽) 3. 지리좌표 4. 범례 5. 축척 6.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 7.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 8. 기타 필요한 사항”와 같이 신설한다.

개정안 제102조 제4항을 “④ 대한민국주변도의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엽명 2. 도곽(내도곽, 외도곽) 3. 지리좌표 4. 범례 5. 축척 6.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 7. 기타 필요한 사항”과 같이 신설한다.

현행 제102조 “별표 2에 의거하여”를 개정안 제103조 “별표 5에 따라”로 한다.

현행 제103조 제3항의 “외도곽은”, “선으로서 형성된다.”를 개정안 제104조 제3항의 “지세도의 외도곽은”, “선으로 표현하고,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외도곽 띄는 한국전통 문양으로 한다.”로 한다.

현행 제104조 제1항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에 의하여 수치를 표기한다.”를 개정안 제105조 제1항에 “기입하며, 대한민국주변도는 매 5°마다 지리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5에 따라 수치를 표기한다.”로 한다.

현행 제105조 제1항 “거리를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106조 제1항

“거리는 별표 5를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106조 “철도기호가”,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107조 “지세도의 철도기호가”, “별표 5에 따라 표시한다”로 한다.

현행 제107조 제1항 “도엽번호는”,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108조 제1항 “지세도의 도엽번호는”, “별표 5를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108조 제1항 “한글로 표시하고, 대한민국전도의 경우 도곽 내부 좌측상단에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한다.”를 개정안 제109조 제1항 “표시하고, 대한민국전도와 대한민국주변도의 경우 도곽 내부 좌측상단에 표시한다.”로 한다.

현행 제108조 제2항 “별표 2와”를 개정안 제109조 제2항 “별표 5와”로 한다.

현행 제108조 제3항 “별표 2와”를 개정안 제109조 제3항 “별표 5와”로 한다.

현행 제109조 “색인도표는”, “대한민국을 전체를”을 개정안 제110조 “지세도의 색인도표는”, “대한민국 전체를”로 한다.

현행 제110조 제1항 “행정구역표는”을 개정안 제111조 제1항 “지세도의 행정구역표는”으로 한다.

현행 제110조 제2항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111조 제2항 “별표 5를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111조 “외도곽 좌측 하단에”, “대한민국전도는 가로 62mm × 세로 132mm”,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112조 “외도곽 우측에”,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는”, “별표 5를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112조를 개정안 제113조로 한다.

현행 제113조 "안내문은"을 "지세도의 안내문은"으로, "발생시 연락처 및 주의사항(국.영문)이 표현되어 있다."를 "발생 시의 연락처와 주의사항(국·영문)을 포함한다."로, "별표 2에 의한다"를 "별표 5를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114조 "표현은 외도곽 좌측 하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를 삭제한다.

개정안 제115조 제2항을 "지세도의 편집 및 수정년도, 인쇄년도 표현은 외도곽 우측 하부에 표시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개정안 제115조 제3항을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는 최종 인쇄년도만 표기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도 5를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115조 "지세도 및 대한민국전도의 축척은 외도곽 우측 하부에 km 단위로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116조 "지세도의 축척은 외도곽 우측 하부에 km단위로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축척은 범례에 포함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116조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외도곽 우측 하부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를 개정안 제117조 "지세도의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외도곽 우측 하부에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범례에 포함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117조 "도곽 우측하단에 표시한다."를 개정안 제118조 "지세도는 외도곽 우측하단에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는 범례에 포함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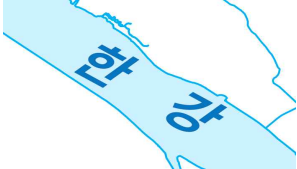
현행 제118조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를 개정안 제119조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4, 5 중 색각이상자
용 지도 제작 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주기표현기준

□ 공통항목

구분	분 류	표현방법	
독립 주기	건 물	 불국사	절, 교회, 성당
	구조물	 첨성대	등대, 문화재
	특정 지역	 정동진	역명, 온천, 광산
집단 주기	행정 구역	 서울특별시	시, 군, 구, 읍, 면, 동, 리
	수 계	 소양호	호, 저수지, 바다, 만
	특정 지역	 강릉항	산, 섬, 항구
선상 주기	도 로	 영종대교	터널, 다리, 철도, 고속도로
	하 천	 한강	강, 하천

[별표 3] 주기표기기준

□ 지세도(1:250,000)

명 칭	표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도 (시·도 나눔)	경 기 도 강 원 도	0~200	10	36	96	31	5	Noto Sans KR Bold
특별시, 광역시	서울특별시	0	13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0	0	0	0	
시	시 흥 시	0~600	11,12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0	0	0	0	
군	강 화 군	0~600	11,12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0	0	0	0	
읍	교 촌 읍	0~500	8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0	0	0	0	
면	대 촌 면	0~500	8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0	0	0	0	
구	부 평 구	0~300	9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0	0	0	0	
리 · 동	하왕릉로 갈매동	0	5.5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Medium
				0	0	0	0	
시, 군청 소재지	안산	0	10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광역시, 특별시청 소재지	인천	0	10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도청소재지	경기도청	0	7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구청소재지	계양	0	7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읍, 면사무소 소재지	부안	0	7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철 도	중 앙 선	0~400	7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고속국도	중부고속국도	0~100	7	99	97	3	1	Noto Sans KR Bold
역명(정류장)	오이도	0	5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Medium
산	마니산	0	6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Medium
산맥	언진산맥	0	12	0	0	0	0	Noto Sans KR Bold
				62	70	100	34	
고개,재,령,현,치	성삼재 육십령	0	6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Medium
국립공원(육지)	월출산국립공원 천관산도립공원	0~100	8,10	83	27	68	9	Noto Sans KR Bold
국립공원(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0~100	10	100	50	0	0	Noto Sans KR Bold
기타지물	인천가톨릭대학교	0	5.5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Medium
문화재	독립문	0	5.5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Medium
바 다	황해	0~8000	16	88	53	0	0	Noto Sans KR Bold
강	한강한강	0~600	6,8,10, 12	88	53	0	0	Noto Sans KR Bold
하 천	경안천경안천	0~600	6,8,10, 12	88	53	0	0	Noto Sans KR Bold
호, 저수지	시화호물왕저수지	0~400	6,8,10	88	53	0	0	Noto Sans KR Bold
만	강화만강화만	0~700	9,12	88	53	0	0	Noto Sans KR Bold
해협·수도	제주해협	0~1800	9,12	100	50	0	0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항구(국가, 지방)	광명항 광명항	0	7,9	88	53	0	0	Noto Sans KR Bold
폭포	수원폭포	0	5.5	88	53	0	0	Noto Sans KR Bold
꽃·포	호미꽃 도리포	0	7,9	88	53	0	0	Noto Sans KR Bold
군도	소 안 군 도	0~300	8,10,12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도(섬)	강 화 도	0~400	5.5,6.5, 8,10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Bold
교량,터널	양화대교 서초터널	0	5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Medium
해수욕장	을왕리	0	5.5	88	53	0	0	Noto Sans KR Bold
교차로 및 나들목	공항신도시분기점 영종나들목	0	5	27	92	78	24	Noto Sans KR Bold
표고점	237	0	5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Medium
삼각점	244	0	5	100	100	100	100	Noto Sans KR Medium
등고선수치 (지형)	100, 200, 300, 400, 500	0	5	100	0	100	0	Noto Sans KR Medium

□ 대한민국전도(1:1,200,000 및 1:2,000,000)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도	경 기 도	200~400	14~15	75	68	67	90	Noto Sans KR Bold
특별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0	9	75	68	67	90	Noto Sans KR Bold
시, 군	김 포 시 부천시	300	7~9	75	68	67	90	Noto Sans KR Bold
광역시청	세종	0	9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도청	경기도청	0	9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시청	수원 시흥	0	6.5~8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군청	강화	0	8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구역명(북한)	홍남구역	0	7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주변국 나라명	중 국	800	25	75	68	67	90	Noto Sans KR Black
주변국 자치주	라 오 닝 성	400	14	75	68	67	90	Noto Sans KR Black
주변국 도시명	진저우	0	8	75	68	67	90	Noto Sans KR Bold
백두대간		0	18	71	61	60	49	Noto Sans KR Black
				0	0	0	0	
고원, 산맥		0	7~8	0	0	0	0	Noto Sans KR Bold
				62	70	100	34	-
산	봉황산	0	5.5~6	84	48	92	62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산높이	1201	0	4.5~5	26	98	79	21	Noto Sans KR Bold
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	0	4.5~5.5	99	80	41	33	Noto Sans KR Bold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0	5~5.5	99	80	41	33	Noto Sans KR Bold
철도	중 앙 선	500	4.5~5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철도역	광명	0	5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터널	가덕해저터널	0	5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대교	서해대교	0	5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호수	충주호	0	7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저수지명	예의저수지	0	6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강, 하천	압록강 부전강	400	7~9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만	경기만 영흥만	0~400	6~12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바다	황해	0~4000	30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해협	대한해협	0~6000	15~30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해저지형	김인우해산	0	9~10	95	63	25	6	Noto Sans KR regular
해리경계	200해리	0	14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제도	흑 산 제 도	100	10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열도, 군도	고군산열도 소중간군도	100	8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반도	강령반도	0	7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곶	등산곶	0	7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섬명(북한)	신미도 중도	100	5~6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섬	거제도 매물도	100	5~8	95	63	25	6	Noto Sans KR Bold
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0	6.5	84	48	92	62	Noto Sans KR Bold
등대	가덕도등대	0	5	98	70	42	29	Noto Sans KR Bold
해수욕장	해운대	0	5	98	70	42	29	Noto Sans KR Bold
항구	안도항	0	5	98	70	42	29	Noto Sans KR Bold
스키장	덕유산리조트	0	5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문화재	무령향릉	0	5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사찰	해인사	0	5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간척지	계화도간척지	0	5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공항	울산공항	0	6	71	61	60	49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평야	내포평야	200	6	84	48	92	62	Noto Sans KR Bold
과학기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0	5	98	70	42	29	Noto Sans KR Bold
DMZ	비무장지대(DMZ)	150	7	20	98	100	0	Noto Sans KR Bold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전도(적색약맹)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도	경 기 도	200~400	14~15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특별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0	9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시, 군	김 포 시 부천시	300	7~9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광역시청	세종	0	9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도청	경기도청	0	9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시청	수원 시흥	0	6.5~8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군청	강화	0	8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구역명(북한)	홍남구역	0	7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주변국 나라명	중 국	800	25	75	68	67	87	Noto Sans KR Black
주변국 자치주	라 오 닝 성	400	14	75	68	67	87	Noto Sans KR Black
주변국 도시명	진저우	0	8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백두대간		0	18	70	62	60	52	Noto Sans KR Black
				0	0	0	0	
고원, 산맥		0	7~8	0	0	0	0	Noto Sans KR Bold
				54	54	82	40	-
산	봉황산	0	5.5~6	74	56	80	75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산높이	1201	0	4.5~5	38	70	30	3	Noto Sans KR Bold
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	0	4.5~5.5	96	83	47	54	Noto Sans KR Bold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0	5~5.5	96	83	47	54	Noto Sans KR Bold
철도	중 앙 선	500	4.5~5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철도역	광명	0	5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터널	가덕해저터널	0	5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대교	서해대교	0	5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호수	충주호	0	7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저수지명	예의저수지	0	6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강, 하천	압록강 부전강	400	7~9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만	경기만 영흥만	0~400	6~12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바다	황해	0~4000	30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해협	대한해협	0~6000	15~30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해저지형	김인우해산	0	9~10	100	80	39	30	Noto Sans KR regular
해리경계	200해리	0	14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제도	흑 산 제 도	100	10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열도, 군도	고군산열도 소중간군도	100	8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반도	강령반도	0	7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곶	동산곶	0	7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섬명(북한)	신미도 중도	100	5~6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섬	거제도 매물도	100	5~8	100	80	39	30	Noto Sans KR Bold
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0	6.5	74	56	79	75	Noto Sans KR Bold
등대	가덕도등대	0	5	93	77	51	60	Noto Sans KR Bold
해수욕장	해운대	0	5	93	77	51	60	Noto Sans KR Bold
항구	안도항	0	5	93	77	51	60	Noto Sans KR Bold
스키장	덕유산리조트	0	5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문화재	무령왕릉	0	5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사찰	해인사	0	5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간척지	계화도간척지	0	5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공항	울산공항	0	6	70	62	60	52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평야	내 포 평야	200	6	74	56	79	75	Noto Sans KR Bold
과학기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0	5	93	77	51	60	Noto Sans KR Bold
DMZ	비무장지대 (DMZ)	150	7	20	61	31	0	Noto Sans KR Bold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전도(녹색약맹)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도	경 기 도	200~400	14~15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특별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0	9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시, 군	김 포 시 부천시	300	7~9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광역시청	세종	0	9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도청	경기도청	0	9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시청	수원 시흥	0	6.5~8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군청	강화	0	8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구역명(북한)	홍남구역	0	7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주변국 나라명	중 국	800	25	75	68	67	87	Noto Sans KR Black
주변국 자치주	랴 오 닝 성	400	14	75	68	67	87	Noto Sans KR Black
주변국 도시명	진저우	0	8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백두대간		0	18	70	60	62	52	Noto Sans KR Black
				0	0	0	0	
고원, 산맥		0	7~8	0	0	0	0	Noto Sans KR Bold
				51	58	79	44	-
산	봉황산	0	5.5~6	84	48	92	62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산높이	1201	0	4.5~5	26	98	79	21	Noto Sans KR Bold
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	0	4.5~5.5	99	80	41	33	Noto Sans KR Bold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0	5~5.5	99	80	41	33	Noto Sans KR Bold
철도	중 앙 선	500	4.5~5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철도역	광명	0	5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터널	가덕해저터널	0	5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대교	서해대교	0	5	99	80	41	33	Noto Sans KR Bold
호수	충주호	0	7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저수지명	예의저수지	0	6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강, 하천	압록강 부전강	400	7~9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만	경기만 영흥만	0~400	6~12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바다	황해	0~4000	30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해협	대한해협	0~6000	15~30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해저지형	김인우해산	0	9~10	92	62	44	26	Noto Sans KR regular
해리경계	200해리	0	14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제도	흑 산 제 도	100	10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열도, 군도	고군산열도 소중간군도	100	8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반도	강령반도	0	7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곶	등산곶	0	7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섬명(북한)	신미도 중도	100	5~6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섬	거제도 매물도	100	5~8	92	62	44	26	Noto Sans KR Bold
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0	6.5	77	53	84	68	Noto Sans KR Bold
등대	가덕도등대	0	5	91	63	57	53	Noto Sans KR Bold
해수욕장	해운대	0	5	91	63	57	53	Noto Sans KR Bold
항구	안도항	0	5	91	63	57	53	Noto Sans KR Bold
스키장	덕유산리조트	0	5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문화재	무령왕릉	0	5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사찰	해인사	0	5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간척지	계화도간척지	0	5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공항	울산공항	0	6	70	60	62	52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평야	내포평야	200	6	84	48	92	62	Noto Sans KR Bold
과학기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0	5	91	63	57	53	Noto Sans KR Bold
DMZ	비무장지대(DMZ)	150	7	19	84	28	0	Noto Sans KR Bold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전도(청색약맹)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도	경 기 도	200~400	14~15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특별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0	9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시, 군	김 포 시 부천시	300	7~9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광역시청	세종	0	9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도청	경기도청	0	9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시청	수원 시흥	0	6.5~8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군청	강화	0	8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구역명(북한)	홍남구역	0	7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주변국 나라명	중 국	800	25	75	68	67	87	Noto Sans KR Black
주변국 자치주	라 오 닝 성	400	14	75	68	67	87	Noto Sans KR Black
주변국 도시명	진저우	0	8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백두대간		0	18	67	55	73	55	Noto Sans KR Black
				0	0	0	0	
고원, 산맥		0	7~8	0	0	0	0	Noto Sans KR Bold
				73	83	30	15	-
산	봉황산	0	5.5~6	80	47	93	57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산높이	1201	0	4.5~5	60	79	0	0	Noto Sans KR Bold
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	0	4.5~5.5	79	48	92	58	Noto Sans KR Bold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0	5~5.5	70	58	75	70	Noto Sans KR Bold
철도	중 앙 선	500	4.5~5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철도역	광명	0	5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터널	가덕해저터널	0	5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대교	서해대교	0	5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호수	충주호	0	7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저수지명	예의저수지	0	6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강, 하천	압록강 부전강	400	7~9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만	경기만 영흥만	0~400	6~12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바다	황해	0~4000	30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해협	대한해협	0~6000	15~30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해저지형	김인우해산	0	9~10	87	34	100	26	Noto Sans KR regular
해리경계	200해리	0	14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제도	흑 산 제도	100	10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열도, 군도	고군산열도 소중간군도	100	8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반도	강령반도	0	7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곶	동산곶	0	7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섬명(북한)	신미도 중도	100	5~6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섬	거제도 매물도	100	5~8	87	34	100	26	Noto Sans KR Bold
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0	6.5	80	47	93	57	Noto Sans KR Bold
등대	가덕도등대	0	5	83	43	99	47	Noto Sans KR Bold
해수욕장	해운대	0	5	83	43	99	47	Noto Sans KR Bold
항구	안도항	0	5	83	43	99	47	Noto Sans KR Bold
스키장	덕유산리조트	0	5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문화재	무령왕릉	0	5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사찰	해인사	0	5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간척지	계화도간척지	0	5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공항	울산공항	0	6	67	55	73	55	Noto Sans KR Bold

명 칭	표 현	글 자 간 격 (최소~최대)	크 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평야	내포평야	200	6	80	47	93	57	Noto Sans KR Bold
과학기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0	5	83	43	99	47	Noto Sans KR Bold
DMZ	비무장지대(DMZ)	150	7	46	81	1	0	Noto Sans KR Bold

□ 대한민국주변도(1:5,000,000)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국가명	대한민국	100~300	20~32	75	68	67	90	Noto Sans KR Black
행정명	엔바이성	0~200	12	75	68	67	90	Noto Sans KR Black
수도	서울	0	12	75	68	67	90	Noto Sans KR Bold
				0	0	0	0	
도시	인천	0	9	75	68	67	90	Noto Sans KR Bold
				0	0	0	0	
호수	소양호	0	8	91	64	27	9	Noto Sans KR Bold
강, 하천	낙동강	0~600	8	91	64	27	9	Noto Sans KR Bold
만	한국만	0~150	7~10	91	64	27	9	Noto Sans KR Bold
해협,운하,해구	대한해협	600	12	91	64	27	9	Noto Sans KR Bold
해명	황해	200~2000	18~24	91	64	27	9	Noto Sans KR Black
대양명	태평양	2500	32	91	64	27	9	Noto Sans KR Black
군도,제도,열도	덕적군도	100	8	73	63	62	60	Noto Sans KR Bold
섬	타이완섬	0	7~10	73	63	62	60	Noto Sans KR Bold
사막	고비사막	300	18	26	77	89	17	Noto Sans KR Bold
반도	산둥반도	0~200	8~12	75	68	67	90	Noto Sans KR Bold
곶	청산곶	0	8	75	68	67	90	Noto Sans KR Bold
산	지리산	0	7	75	68	67	90	Noto Sans KR Bold
산높이	3058	0	7	75	68	67	90	Noto Sans KR Medium

명 칭	표 현	글 자 간 격 (최소~최대)	크 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과 학 기 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대한민국)	0	7	86	51	60	37	Noto Sans KR Bold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주변도(적색약맹)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국가명	대한민국	100~300	20~32	75	68	67	87	Noto Sans KR Black
행정명	엔바이성	0~200	12	75	68	67	87	Noto Sans KR Black
수도	서울	0	12	75 0	68 0	67 0	87 0	Noto Sans KR Bold
도시	인천	0	9	75 0	68 0	67 0	87 0	Noto Sans KR Bold
호수	소양호	0	8	94	76	38	26	Noto Sans KR Bold
강, 하천	낙동강	0~600	8	94	76	38	26	Noto Sans KR Bold
만	한국만	0~150	7~10	94	76	38	26	Noto Sans KR Bold
해협, 운하, 해구	대한해협	600	12	94	76	38	26	Noto Sans KR Bold
해명	황해	200~2000	18~24	94	76	38	26	Noto Sans KR Black
대양명	태평양	2500	32	94	76	38	26	Noto Sans KR Black
군도, 제도, 열도	독도	100	8	72	63	64	64	Noto Sans KR Bold
섬	타이완섬	0	7~10	72	63	64	64	Noto Sans KR Bold
사막	고비사막	300	18	32	53	59	9	Noto Sans KR Bold
반도	산둥반도	0~200	8~12	75	67	66	87	Noto Sans KR Bold
꽃	청산꽃	0	8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산	지리산	0	7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산높이	3058	0	7	75	68	67	87	Noto Sans KR Medium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과학기 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대한민국)	0	7	81	55	69	60	Noto Sans KR Bold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주변도(녹색약맹)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 체
				C	M	Y	K	
국가명	대한민국	100~300	20~32	75	68	67	87	Noto Sans KR Black
행정명	엔바이성	0~200	12	75	68	67	87	Noto Sans KR Black
수도	서울	0	12	75 0	68 0	67 0	87 0	Noto Sans KR Bold
도시	인천	0	9	75 0	68 0	67 0	87 0	Noto Sans KR Bold
호수	소양호	0	8	89	62	42	24	Noto Sans KR Bold
강, 하천	낙동강	0~600	8	89	62	42	24	Noto Sans KR Bold
만	한국만	0~150	7~10	89	62	42	24	Noto Sans KR Bold
해협, 운하, 해구	대한해협	600	12	89	62	42	24	Noto Sans KR Bold
해명	황해	200~2000	18~24	89	62	42	24	Noto Sans KR Black
대양명	태평양	2500	32	89	62	42	24	Noto Sans KR Black
군도, 제도, 열도	덕적군도	100	8	72	63	64	64	Noto Sans KR Bold
섬	타이완섬	0	7~10	72	63	64	64	Noto Sans KR Bold
사막	고비사막	300	18	30	68	57	12	Noto Sans KR Bold
반도	산둥반도	0~200	8~12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꽃	청산꽃	0	8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산	지리산	0	7	75	68	67	87	Noto Sans KR Bold
산높이	3058	0	7	75	68	67	87	Noto Sans KR Medium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과학기 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대한민국)	0	7	83	48	76	51	Noto Sans KR Bold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주변도(청색약맹)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 체
				C	M	Y	K	
국가명	대한민국	100~300	20~32	73	66	68	85	Noto Sans KR Black
행정명	엔바이성	0~200	12	73	66	68	85	Noto Sans KR Black
수도	서울	0	12	73 0	66 0	68 0	85 0	Noto Sans KR Bold
도시	인천	0	9	73 0	66 0	68 0	85 0	Noto Sans KR Bold
호수	소양호	0	8	84	36	100	30	Noto Sans KR Bold
강, 하천	낙동강	0~600	8	83	38	100	33	Noto Sans KR Bold
만	한국만	0~150	7~10	83	38	100	33	Noto Sans KR Bold
해협, 운하, 해구	대한해협	600	12	83	38	100	33	Noto Sans KR Bold
해명	황해	200~2000	18~24	83	38	100	33	Noto Sans KR Black
대양명	태평양	2500	32	83	38	100	33	Noto Sans KR Black
군도, 제도, 열도	덕적군도	100	8	69	56	79	67	Noto Sans KR Bold
섬	타이완섬	0	7~10	69	56	79	67	Noto Sans KR Bold
사막	고비사막	300	18	57	75	1	0	Noto Sans KR Bold
반도	산둥반도	0~200	8~12	73	66	68	85	Noto Sans KR Bold
꽃	청산꽃	0	8	73	66	68	85	Noto Sans KR Bold
산	지리산	0	7	73	66	68	85	Noto Sans KR Bold
산높이	3058	0	7	73	66	68	85	Noto Sans KR Medium

명 칭	표 현	글자간격 (최소~최대)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과학기 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대한민국)	0	7	81	41	100	39	Noto Sans KR B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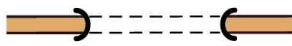
[별표 4] 기호표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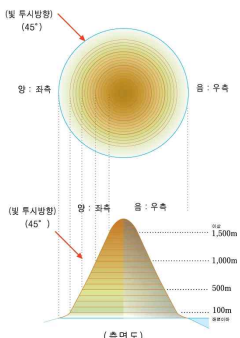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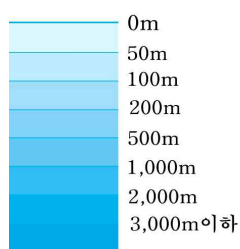
□ 지세도(1:250,000)

구분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수계	바다	면		20	0	0	0	
수계	해안선	선		100	0	0	0	2
수계	실폭하천	선		100	0	0	0	
				20	0	0	0	내부색
수계	단선하천	선		100	0	0	0	
수계	호수, 저수지	면		20	0	0	0	
				100	0	0	0	테두리색
수계	폭포	점		75	69	66	28	
수계	보	선		0	0	0	100	
수계	모래·자갈	면						
수계	진흙	면						
수계	자연벼랑바위	선						
수계	제방	선		0	50	100	0	
지형	주곡선	선		0	50	100	22	
지형	계곡선	선		0	50	100	22	
지형	표 고 점	점		0	0	0	100	
경계	국가 경계	선		0	0	0	100	패턴색
				0	50	55	0	배경색

구분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경계	도(특별, 광역) 경계	선		0	35	8	0	
경계	시·군·구 경계	선		41	97	36	0	
경계	읍·면 경계	선		50	100	0	0	
토지	논	점		100	0	0	0	
토지	밭 초록색	점		0	75	100	0	
토지	습지	점		100	0	0	0	
토지	온천	점		75	69	66	28	
토지	묘지	점		100	100	100	100	
토지	문화재 (상단 3개 통합)			75	70	65	28	
토지	공항·비행장	점		75	70	65	28	
토지	염전	면		100	0	0	0	
토지	광산	점		0	0	0	100	
토지	국가항	점		75	70	65	28	
토지	지방항	점		75	70	65	28	
토지	해수욕장	점		75	70	65	28	
토지	스키장	점		75	70	65	28	

구분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토지	산업단지	점		75	70	65	28	
교통	고속국도	선		91	74	19	4	내부색
				60	72	70	79	측선
교통	고속국도(기호)	점		4	91	100	0	내부색1
				73	24	0	0	내부색2
				64	69	69	79	테두리색
교통	일반국도	선		3	73	100	0	내부색
				60	72	70	79	측선
교통	일반국도(기호)	점		75	29	0	0	내부색
				64	69	69	79	테두리색
교통	국가지원, 지방도	선		75	35	34	3	내부색
				60	72	70	79	측선
교통	지방도(기호)	점		2	16	100	0	내부색
				64	69	69	79	테두리색
교통	일반도로	선		11	35	66	0	내부색
				60	72	70	79	측선
교통	소형차로	선		0	0	0	70	
교통	소로	선		0	0	0	70	
교통	도로 교차부, 분기점	선		91	74	19	4	내부색
				60	72	70	79	측선
교통	철도 교차부, 분기점	선		0	0	0	100	2
교통	도로의 고가부	선		11	20	54	1	2
교통	건설 중 도로	선		0	0	0	100	1,2,4
교통	고속철도	선		0	0	0	0	색1
				0	0	0	100	색2
교통	일반철도	선		0	0	0	100	

구분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교통	도로터널	선		100	100	100	100	
교통	철도터널	선		0	0	0	100	
교통	고속철도터널	선		0	0	0	100	
교통	일반교량	선		100	100	100	100	
교통	철도교량	선		0	0	0	100	
건물	대학교	점		75	70	65	28	
건물	사찰	점		75	70	65	28	
건물	교회, 성당	점		75	70	65	28	
건물	여객터미널	점		75	70	65	28	
건물	특별시·광역시·도청	점		26	98	100	0	
건물	시·군·구청	점		75	70	65	28	
건물	읍·면 행정복지센터	점		75	70	65	28	
건물	동·리소재지	점		75	70	65	28	
건물	경기장	점		75	70	65	28	
기타	등대(유인)	점		75	70	65	28	
기타	등대(무인)	점		75	70	65	28	

구분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기타	음영	육지		음영(m)	해저(음영)					
				1,500 이상	43	50	95	42		
				1,000~1,500	39	45	85	40		
				500~1,000	37	40	80	30		
				100~500	35	21	70	0		
				0~100	37	19	40	0		
				0	20	18	21	0		
				음영(m)	음(우측)					
				1,500 이상	28	35	80	27		
				1,000~1,500	24	30	70	25		
				500~1,000	22	25	65	15		
				100~500	20	6	55	0		
				0~100	12	4	25	0		
				0	5	3	6	0		
		해저		수심	색상					
				0~50	10	0	0	0		
				50~100	20	0	0	0		
				100~200	27	2	0	0		
				200~500	38	2	0	0		
				500~1,000	50	3	0	0		
				1,000~2,000	60	7	0	0		
				2,000~3,000	70	10	0	0		
				3,000 이하	80	12	0	0		

□ 대한민국전도(1:1,200,000 및 1:2,000,000)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광역시, 도청	점	 (1.842x1.842mm)	26	98	100	1	
시청, 군청	점	 (1.468x1.468mm)	75	70	65	28	
과학기지	점	 (2.215x2.215mm)	75	70	65	28	
산	점	 (1.627x1.319mm)	75	70	65	28	
공항	점	 (1.503x1.717mm)	75	70	65	28	
등대	점	 (1.572x1.855mm)	75	70	65	28	
사찰	점	 (1.508x1.506mm)	75	70	65	28	
해수욕장	점	 (1.503x1.259mm)	75	70	65	28	
항구	점	 (1.065x1.339mm)	75	70	65	28	
스키장	점	 (1.768x1.830mm)	75	70	65	28	
문화재	점	 (1.058x1.565mm)	67	61	56	40	
해리경계	선		99	71	45	36	
고속국도	선		0	0	0	0	중심선
			75	45	14	0	내부선
			89	62	13	0	외부선
	점		20	98	100	0	기호상
			77	33	7	0	기호하
			78	82	83	67	기호선
			0	0	0	0	숫자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일반국도	선		38	41	49	25	내부선
			0	100	100	0	외부선
	점		3	3	12	0	기호내
			50	48	51	41	기호선
			77	69	63	82	숫자
지방도	선		20	35	74	11	내부선
			0	38	100	34	외부선
고속철도	선		0	0	0	0	색상1
			95	75	16	0	색상2
철도	선		71	64	61	15	
고속도로(주변국)	선		0	0	0	0	중심선
			60	38	0	0	내부선
			90	84	1	0	외부선
일반도로(주변국)	선		51	37	30	1	
주요철도(주변국)	선		0	0	0	0	색상1
			40	0	0	100	색상2
국가경계	선		12	38	10	0	
특별, 광역, 자치시, 도경계	선		42	100	100	9	
시, 군 경계	선		50	100	0	0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주변국가 경계	선		7	0	3	0	하단
			32	43	93	91	중심부
			32	43	93	21	상단
비무장지대	선		20	98	100	0	
밀집지역, 시가지	면		12	31	53	2	내부
	선		31	44	64	25	외부
강, 호수	면		15	0	0	0	
	선		100	40	0	0	
해안선	선		100	40	0	0	
해안선(주변국가)			100	0	0	0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육지	음영		고도(m)	색상				
			1,500 이상	33	49	92	13	
			1,000~1,500	25	40	82	3	
			500~1,000	10	26	65	0	
			100~500	17	5	47	0	
			0~100	42	9	76	0	
			0	44	9	78	0	
해저			수심(m)	색상				
			0~50	16	2	2	0	
			50~100	23	3	4	0	
			100~200	33	7	6	0	
			200~500	43	11	6	0	
			500~1,000	51	13	7	0	
			1,000~2,000	60	18	9	0	
			2,000~3,000	68	20	9	0	
3,000 이하	75	25	11	0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전도(적색약맹)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광역시, 도청, 수도	점	 (1.842x1.842mm)	25	62	33	1	
시청, 군청	점	 (1.468x1.468mm)	67	60	56	39	
과학기지	점	 (2.215x2.215mm)	67	60	56	39	
산	점	 (1.627x1.319mm)	67	60	56	39	
공항	점	 (1.503x1.717mm)	67	60	56	39	
등대	점	 (1.572x1.855mm)	67	60	56	39	
사찰	점	 (1.508x1.506mm)	67	60	56	39	
해수욕장	점	 (1.503x1.259mm)	67	60	56	39	
항구	점	 (1.065x1.339mm)	58	50	45	12	
스키장	점	 (1.768x1.830mm)	67	60	56	39	
문화재	점	 (1.058x1.565mm)	67	60	56	39	
산성	점	 (1.243x0.833mm)	67	60	56	39	
해리경계	선		89	74	54	65	
고속국도	선		0	0	0	0	중심선
			80	60	24	5	내부선
			89	71	26	9	외부선
	점		20	61	31	0	기호상
			89	63	27	8	기호하
			78	82	83	67	기호선
			0	0	0	0	숫자
일반국도	선		49	45	52	11	내부선
			29	47	48	3	외부선
	점		3	1	12	0	기호내
			50	48	51	41	기호선
			77	69	63	82	숫자
지방도	선		28	28	67	1	내부선
			29	32	82	2	외부선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고속철도	선		0	0	0	0	색상1
			100	88	29	16	색상2
철도	선		63	55	53	27	
고속도로(주변국)	선		0	0	0	0	중심선
			64	51	6	0	내부선
			78	70	4	0	외부선
일반도로(주변국)	선		50	37	32	2	
주요철도(주변국)	선		0	0	0	0	색상1
			75	68	66	87	색상2
국가경계	선		18	28	5	0	
특별, 광역, 자치시, 도경계	선		41	69	45	14	
시, 군 경계	선		56	72	1	0	
주변국가 경 계	선		7	0	3	0	하단
			32	43	93	91	중심부
			32	43	93	21	상단
비무장지대	선		20	61	31	0	
밀집지역, 시가지	면		16	21	43	0	내부
	선		27	30	50	0	외부
강, 호수	면		20	8	4	0	
	선		100	77	32	17	
해안선	선		100	77	32	17	
해안선(주변국가)			96	68	26	9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육지	음영		고도(m)	색상				
			1,500 이상	36	37	79	7	
			1,000~1,500	27	29	71	1	
			500~1,000	9	13	53	0	
			100~500	18	7	49	0	
			0~100	42	18	83	1	
			0	44	20	87	1	
해저			수심(m)	색상				
			0~50	16	7	4	0	
			50~100	25	12	7	0	
			100~200	36	19	12	0	
			200~500	47	27	17	0	
			500~1,000	59	35	21	0	
			1,000~2,000	68	41	25	2	
	2,000~3,000		77	47	29	5		
	3,000 이하		87	57	3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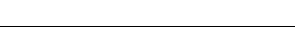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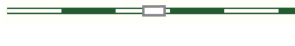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전도(녹색약맹)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광역시, 도청	점	 (1.842x1.842mm)	23	85	30	1	
시청, 군청	점	 (1.468x1.468mm)	67	61	56	40	
과학기지	점	 (2.215x2.215mm)	67	61	56	40	
산	점	 (1.627x1.319mm)	67	61	56	40	
공항	점	 (1.503x1.717mm)	67	61	56	40	
등대	점	 (1.572x1.855mm)	67	61	56	40	
사찰	점	 (1.508x1.506mm)	67	61	56	40	
해수욕장	점	 (1.503x1.259mm)	67	61	56	40	
항구	점	 (1.065x1.339mm)	67	61	56	40	
스키장	점	 (1.768x1.830mm)	67	61	56	40	
문화재	점	 (1.058x1.565mm)	67	61	56	40	
성벽	점	 (1.243x0.833mm)	67	61	56	40	
해리경계	선		90	64	58	59	
고속국도	선		0	0	0	0	중심선
			77	47	28	5	내부선
			84	55	30	8	외부선
	점		19	84	28	0	기호상
			83	39	35	6	기호하
			78	82	83	67	기호선
			0	0	0	0	숫자
일반국도	선		48	47	52	12	내부선
			27	63	46	4	외부선
	점		3	1	12	0	기호내
			50	48	51	41	기호선
			77	69	63	82	숫자
지방도	선		27	35	68	2	내부선
			27	40	82	4	외부선
고속철도	선		0	0	0	0	색상1
			98	75	31	15	색상2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철도	선		71	64	61	15	
고속도로(주변국)	선		0	0	0	0	중심선
			63	42	9	0	내부선
			67	59	3	0	외부선
일반도로(주변국)	선		50	37	32	2	
주요철도(주변국)	선		0	0	0	0	색상1
			75	68	66	87	색상2
국가경계	선		18	35	3	0	
특별, 광역, 자치시, 도경계	선		40	87	42	16	
시, 군 경계	선		57	82	1	0	
주변국가 경계	선		7	0	3	0	하단
			32	43	93	91	중심부
			32	43	93	21	상단
비무장지대	선		19	84	28	0	
밀집지역, 시가지			15	29	43	0	내부
			30	36	53	2	외부
강, 호수	면		20	2	6	0	
	선		91	56	31	9	
해안선	선		91	56	31	9	
해안선(주변국가)			83	28	40	3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육지	음영		고도(m)	색상				
			1,500 이상	33	44	79	9	
			1,000~1,500	25	36	71	2	
			500~1,000	9	22	53	0	
			100~500	18	6	50	0	
			0~100	43	13	85	0	
			0	38	12	80	0	
해저	음영		수심(m)	색상				
			0~50	19	4	6	0	
			50~100	29	7	11	0	
			100~200	38	13	15	0	
			200~500	46	16	20	0	
			500~1,000	59	22	27	0	
			1,000~2,000	67	26	33	0	
			2,000~3,000	75	29	38	2	
			3,000 이하	81	35	41	6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전도(청색약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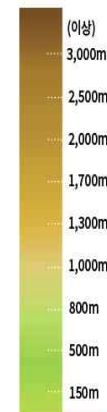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광역시, 도청	점	 (1.842x1.842mm)	50	80	1	0	
시청, 군청	점	 (1.468x1.468mm)	67	60	56	40	
과학기지	점	 (2.215x2.215mm)	67	60	56	40	
산	점	 (1.627x1.319mm)	67	60	56	40	
공항	점	 (1.503x1.717mm)	67	60	56	40	
등대	점	 (1.572x1.855mm)	67	60	56	40	
사찰	점	 (1.508x1.506mm)	67	60	56	40	
해수욕장	점	 (1.503x1.259mm)	67	60	56	40	
항구	점	 (1.065x1.339mm)	67	60	56	40	
스키장	점	 (1.768x1.830mm)	67	60	56	40	
문화재	점	 (1.058x1.565mm)	67	60	56	40	
산성	점	 (1.243x0.833mm)	67	60	56	40	
해리경계	선		82	46	95	54	
고속국도	선		0	0	0	0	중심선
			75	26	100	11	내부선
			82	29	99	16	외부선
	점		46	81	0	0	기호상
			81	12	100	1	기호하
			78	82	83	67	기호선
			0	0	0	0	숫자
일반국도	선		54	58	20	1	내부선
			17	50	0	0	외부선
	점		3	1	10	0	기호내
			50	48	51	41	기호선
			77	69	63	82	숫자
지방도	선		27	48	0	0	내부선
			33	54	1	0	외부선
고속철도	선		0	0	0	0	색상1
			84	38	100	34	색상2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철도	선		62	54	54	26	
고속도로(주변국)	선		0	0	0	0	중심선
			64	23	90	6	내부선
			69	42	58	20	외부선
일반도로(주변국)	선		64	55	52	27	
주요철도(주변국)	선		0	0	0	0	색상1
			75	68	66	87	색상2
국가경계	선		27	40	0	0	
특별, 광역, 자치시, 도경계	선		64	78	0	0	
시, 군 경계	선		64	78	0	0	
주변국가 경계	선		7	0	3	0	하단
			32	43	93	91	중심부
			32	43	93	21	상단
비무장지대	선		47	80	0	0	
밀집지역, 시가지			19	35	0	0	내부
			32	45	0	0	외부
강, 호수	면		24	0	61	0	
	선		84	15	99	2	
해안선	선		84	15	99	2	
해안선(주변국가)			72	0	99	0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육지	음영		고도(m)	색상				
			1,500 이상	37	60	0	0	
			1,000~1,500	28	48	0	0	
			500~1,000	15	31	0	0	
			100~500	16	5	45	0	
			0~100	42	3	100	0	
			0	45	5	100	0	
해저	음영		수심(m)	색상				
			0~50	19	0	44	0	
			50~100	30	0	69	0	
			100~200	41	0	89	0	
			200~500	51	0	100	0	
			500~1,000	59	0	100	0	
			1,000~2,000	68	2	100	0	
			2,000~3,000	74	3	100	0	
			3,000 이하	78	6	1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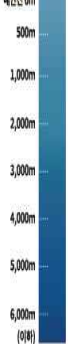
□ 대한민국주변도(1:5,000,000)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수도	점	 (2.077x2.078mm)	32	98	100	1	
도시	점	 (1.669x1.670mm)	75	70	65	28	
과학기지	점	 (2.214x2.215mm)	66	60	57	41	
산	점	 (2.178x1.918mm)	79	52	85	68	
공항	점	 (2.214x2.215mm)	75	69	66	28	
등대	점	 (2.215x2.215mm)	75	69	66	28	
성곽	선		0	0	0	100	
고속도로	선		0	0	0	0	중심선
			60	37	0	0	내부선
			90	85	0	0	외곽선
주요도로	선		51	37	30	1	
고속철도	선		0	0	0	0	색상1
			33	87	80	39	색상2
철도	선		0	0	0	0	색상1
			40	0	0	100	색상2
국가경계	선		3	53	92	0	
행정경계	선		7	0	3	0	하단
			32	43	93	91	중심부
			32	43	93	21	상단
비무장지대(DMZ)	선		0	100	0	0	중심부
호수	면		35	5	0	0	내부
	선		100	0	0	0	외곽선
강	선		100	3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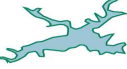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해안선	선		100	30	0	0		
육지	음영		고도(m)	색상				
			3,000 이상	57	70	100	26	
			2,500~3,000	48	57	95	4	
			2,000~2,500	44	51	91	1	
			1,700~2,000	39	46	88	0	
			1,300~1,700	32	40	85	0	
			1,000~1,300	27	33	77	0	
			800~1,000	28	20	65	0	
			500~800	39	8	71	0	
			150~500	49	9	81	0	
			0~150	46	10	82	0	
			0	37	17	52	0	
해저			수심(m)	색상				
			0~500	61	9	10	0	
			500~1,000	65	9	11	0	
			1,000~2,000	66	9	12	0	
			2,000~3,000	70	13	12	0	
			3,000~4,000	76	30	12	0	
			4,000~5,000	79	40	14	0	
			5,000~6,000	80	44	13	0	
			6,000 이하	85	53	1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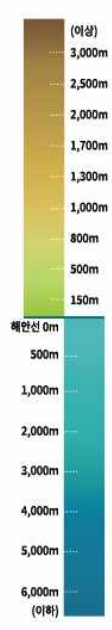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주변도(적색약맹)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수도	점	 (2.077x2.078mm)	29	63	37	2	
도시	점	 (1.669x1.670mm)	67	60	56	39	
과학기지	점	 (2.214x2.215mm)	67	60	56	39	
산	점	 (2.178x1.918mm)	72	57	78	75	
공항	점	 (2.214x2.215mm)	67	60	56	39	
등대	점	 (2.215x2.215mm)	67	60	56	39	
성곽	선		0	0	0	100	
고속도로	선		0	0	0	0	중심선
			64	51	6	0	내부
			78	70	4	0	외곽선
주요도로	선		51	37	30	1	
고속철도	선		0	0	0	0	색상1
			46	65	53	25	색상2
철도	선		0	0	0	0	색상1
			75	68	67	87	색상2
국가경계	선		2	22	69	0	
행정경계	선		7	0	3	0	하단
			32	43	93	91	중심부
			41	37	87	10	상단
비무장지대(DMZ)	선		9	29	1	0	중심부
호수	면		38	19	8	0	내부
	선		95	65	35	18	외곽선
강	선		72	40	20	1	내부
			100	81	26	11	외부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해안선	선		100	81	26	11		
육지	음영		고도(m)	색상				
			3,000 이상	45	50	83	25	
			2,500~3,000	38	38	87	9	
			2,000~2,500	34	33	85	4	
			1,700~2,000	30	29	85	2	
			1,300~1,700	24	23	84	0	
			1,000~1,300	20	17	77	0	
			800~1,000	21	11	69	0	
			500~800	33	9	86	0	
			150~500	45	14	100	0	
			0~150	42	13	100	0	
			0	35	10	100	0	
해저			수심(m)	색상				
	0~500		65	31	21	0		
	500~1,000		76	38	24	1		
	1,000~2,000		78	41	27	2		
	2,000~3,000		84	46	28	5		
	3,000~4,000		91	62	25	7		
	4,000~5,000		96	72	23	7		
	5,000~6,000		98	76	24	8		
	6,000 이하		100	83	2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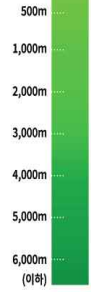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주변도(녹색약맹)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수도	점	 (2.077x2.078mm)	28	84	34	3	
도시	점	 (1.669x1.670mm)	66	60	56	40	
과학기지	점	 (2.214x2.215mm)	66	60	56	40	
산	점	 (2.178x1.918mm)	74	55	81	72	
공항	점	 (2.214x2.215mm)	66	60	56	40	
등대	점	 (2.215x2.215mm)	66	60	56	40	
성곽	선		73	70	100	59	
고속도로	선		0	0	0	0	중심선
			63	42	9	0	내부
			76	64	5	0	외곽선
주요도로	선		51	37	30	1	
고속철도	선		0	0	0	0	색상1
			43	81	51	28	색상2
철도	선		0	0	0	0	색상1
			75	68	67	87	색상2
국가경계	선		1	38	72	0	
행정경계	선		7	0	3	0	하단
			32	43	93	91	중심부
			39	43	86	13	상단
비무장지대(DMZ)	선		15	44	0	0	
호수	면		37	10	11	0	내부
	선		85	25	70	9	외곽
강	선		69	19	28	0	내부
			88	45	33	7	외부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해안선	선		87	51	45	1	
육지	음영	 (이상) 3,000m 2,500m 2,000m 1,700m 1,300m 1,000m 800m 500m 150m 해안선 0m	고도(m)	색상			
			3,000 이상	58	67	85	20
			2,500~3,000	46	53	84	1
			2,000~2,500	41	47	81	0
			1,700~2,000	35	41	79	0
			1,300~1,700	30	34	78	0
			1,000~1,300	24	28	72	0
			800~1,000	25	18	63	0
			500~800	37	8	77	0
			150~500	48	11	90	0
			0~150	43	9	90	0
			0	40	9	88	0
해저		500m 1,000m 2,000m 3,000m 4,000m 5,000m 6,000m (이하)	수심(m)				
			0~500	64	13	31	0
			500~1,000	70	16	36	0
			1,000~2,000	71	17	38	0
			2,000~3,000	75	21	41	0
			3,000~4,000	81	39	39	0
			4,000~5,000	84	48	38	0
			5,000~6,000	86	52	37	0
			6,000 이하	91	62	4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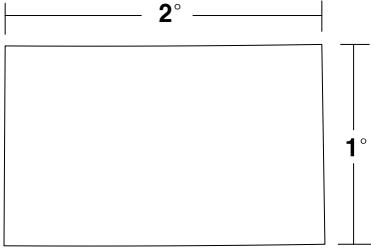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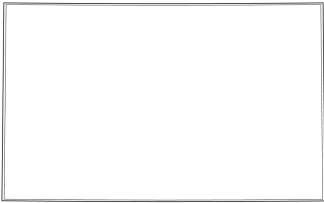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주변도(청색약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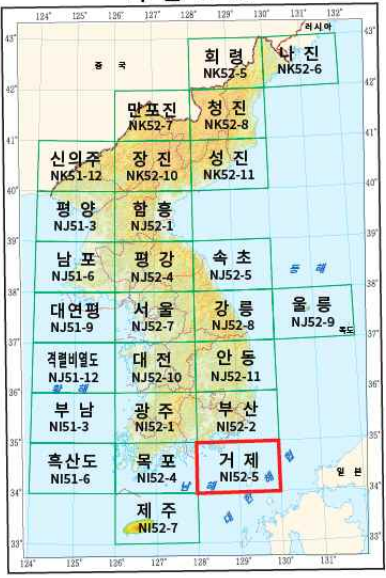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수도	점	 (2.077x2.078mm)	53	79	0	0	
도시	점	 (1.669x1.670mm)	67	60	56	40	
과학기지	점	 (2.214x2.215mm)	67	60	56	40	
산	점	 (2.178x1.918mm)	75	52	87	66	
공항	점	 (2.214x2.215mm)	67	60	56	40	
등대	점	 (2.215x2.215mm)	67	60	56	40	
성곽	선		0	0	0	100	
고속도로	선		0	0	0	0	중심선
			64	24	90	5	내부
			69	42	58	20	외곽선
주요도로	선		50	30	55	5	
고속철도	선		0	0	0	0	색상1
			70	77	0	0	색상2
철도	선		0	0	0	0	색상1
			73	66	68	85	색상2
국가경계	선		17	50	1	0	
행정경계	선		0	0	0	0	하단
			32	43	93	91	중심부
			44	60	22	1	상단
비무장지대(DMZ)	선		22	60	0	0	중심부
호수	면		43	0	92	0	내부
	선		76	0	100	0	외곽
강	선		69	0	99	0	내부
			84	13	99	2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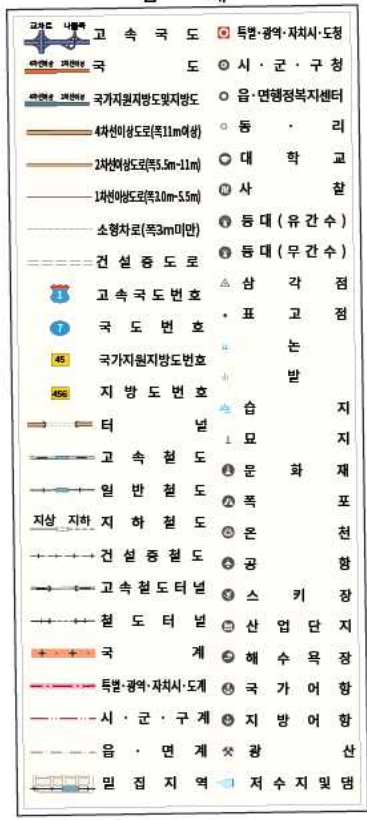
명 칭	유형	도 식 규 정					선	
		표현	C	M	Y	K	종류	
해안선	선		89	31	99	21		
육지	음영		고도(m)	색상				
			3,000 이상	58	79	0	0	
			2,500~3,000	40	63	0	0	
			2,000~2,500	34	55	6	0	
			1,700~2,000	27	47	10	0	
			1,300~1,700	21	40	15	0	
			1,000~1,300	16	32	20	0	
			800~1,000	19	17	49	0	
			500~800	35	0	100	0	
			150~500	45	0	100	0	
			0~150	42	0	100	0	
			0	36	0	100	0	
해저			수심(m)	색상				
			0~500	60	0	100	0	
			500~1,000	65	0	100	0	
			1,000~2,000	66	0	100	0	
			2,000~3,000	69	0	100	0	
			3,000~4,000	78	0	100	0	
			4,000~5,000	82	11	100	2	
			5,000~6,000	84	13	100	3	
			6,000 이하	86	18	1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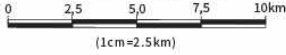
[별표 5] 난외표현기준

□ 지세도(1:250,000)

구 분	표 현	크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도엽명	거 제 (巨 濟)	35	0	0	0	100	Noto Sans KR Bold
도엽번호	1:250,000 지세도 도엽번호 NJ 51-12	12	0	0	0	100	Noto Sans KR Medium
지리좌표	129° 30′	5.5	0	0	0	100	Noto Sans KR Medium
행선지명 (도로, 철도)	나두리 0.6km 대전역 0.1km	5	0	0	0	100	Noto Sans KR Light
내도곽		-	0	0	0	100	-
외도곽		-	0	0	0	100	-

구 분	표현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색인도표	색 인 도 표 	—	—	—	—	—	—
행정구역	행 정 구 역  지도상의 해상 경계선은 도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임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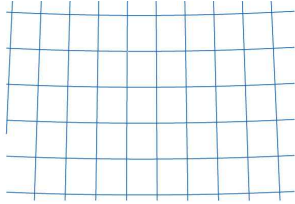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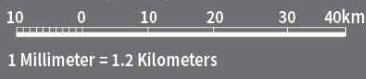
구 분	표 현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범례	범례 	-	-	-	-	-	-
범례보기	범례보기  1. 측량의 기준은 시계측지계 (ITRF2000, GRS80) 2. 높이의 기준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 기타 도시는 별도 기준) 3. 투영은 횡단 메케이터 도법(TM: Transverse Mercator) 4. 도곽의 수치는 투영원점을 기준으로 한 지리좌표 5. 동고선 간격은 주곡선 100m, 계곡선 500m	-	-	-	-	-	-

구 분	표 현	크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안내문	안 내 문 본 지도의 내용 중 잘못된 곳이나 새로 변경된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119 신고센터/국토변경신고센터"에 문의 주시면 지도수정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전화 : 031-210-2600) 주 의 사 항 1. 본 지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복제 (스캐닝포함), 국외 반출 및 본 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합니다. 2. 위반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및 제 109조에 의해 2년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W A R N I N G 1. No one should duplicate(including electronic scans), carry abroad this map, and publish the other reproduction maps by using it without permission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14, Article 15, Article 16 of the Law of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CT. OF SPATIAL DATA 2. A violator is subject to imprisonment less than 1 or 2 years or to a fine not exceeding twenty or ten million won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108, Article 109 of the Law of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CT. OF SPATIAL DATA	-	0	0	0	100	Noto Sans KR Medium Noto Sans KR Regular Noto Sans KR Bold
축척	축척 1:250,000 	-	0	0	0	100	Noto Sans KR Bold
발행처	 국토지리정보원	-	-	-	-	-	-
QR코드		-	-	-	-	-	-
제작년월일	2011년 제작, 2021년 수정, 2021년 인쇄	11.5	0	0	0	100	Noto Sans KR Medium

[좌표체계기준]

구분	좌표체계
1:250,000 대한민국지세도	좌 표 계: 평면직각 좌표계 투 영 법: 횡측머케이터 도법 가산수치: X(N)=2,000,000m, Y(E)=1,000,000m 축척계수: 0.9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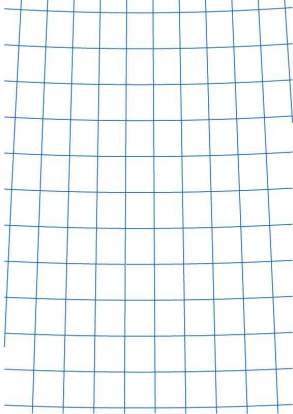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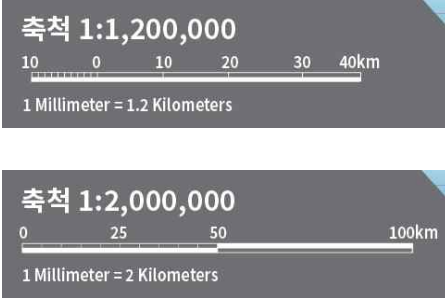
□ 대한민국전도(1:1,200,000 및 1:2,000,000)

구 분	표 현	크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도엽명	대한민국전도	100	76	69	65	28	Noto Sans KR Bold
경 위도	E123° N43°	10	0	0	0	100	Noto Sans KR Bold
경 위도선		-	100	60	0	0	-
도곽띠		-	76	69	65	28	-
제작년월일	2021년 12월 인쇄	10	0	0	0	0	Noto Sans KR Medium
QR코드		220 x 220 (mm)	-	-	-	-	-
발행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	-	-	-	-
축척	축척 1:1,200,000  1 Millimeter = 1.2 Kilometers 축척 1:2,000,000  1 Millimeter = 2 Kilometers	6~10	0	0	0	0	Noto Sans KR B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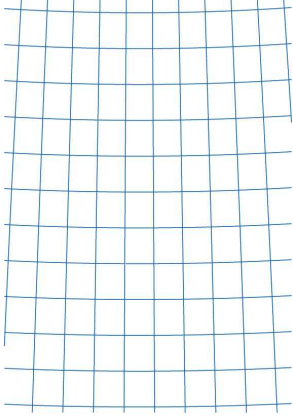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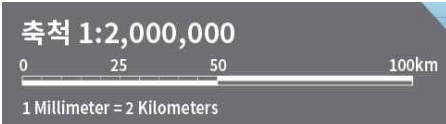
[좌표체계기준]

구분	좌표체계
1:1,200,000 1:2,000,000 대한민국전도	좌 표 계: 평면직각 좌표계 투 영 법: 횡축머케이터 도법 가산수치: X(N)=2,000,000m, Y(E)=1,000,000m 축척계수: 0.9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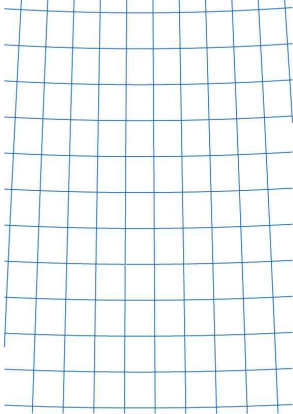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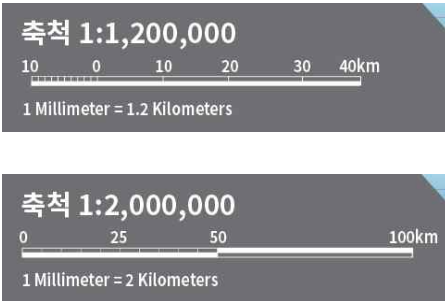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전도(적색약맹)

구 분	표 현	크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도엽명	대한민국전도	100	67	60	57	40	Noto Sans KR Bold
경위도	E123° N43°	10	0	0	0	100	Noto Sans KR Bold
경위도선		-	100	60	0	0	-
도곽띠		-	67	60	56	40	-
제작년월일	2021년 12월 인쇄	10	0	0	0	0	Noto Sans KR Medium
QR코드		220 x 220 (mm)	-	-	-	-	-
발행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100	88	41	53	-
			3	60	0	0	
			64	56	53	28	
축척		6~10	0	0	0	0	Noto Sans KR B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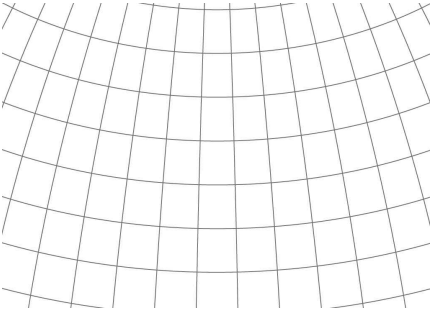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전도(녹색약맹)

구 분	표 현	크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도엽명	대한민국전도	100	67	60	56	40	Noto Sans KR Bold
경위도	E123° N43°	10	0	0	0	100	Noto Sans KR Bold
경위도선		-	100	60	0	0	-
도곽띠		-	67	60	56	40	-
제작년월일	2021년 12월 인쇄	10	0	0	0	0	Noto Sans KR Medium
QR코드		220 x 220 (mm)	-	-	-	-	-
발행처		-	100	77	46	47	-
			5	85	0	0	
			55	47	47	13	
축척	 	6~10	0	0	0	0	Noto Sans KR B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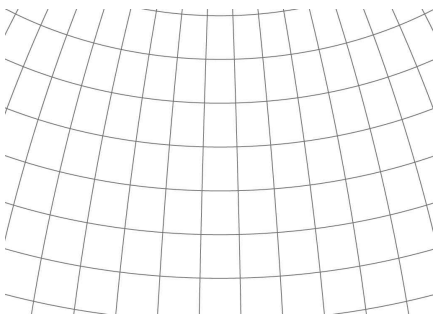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전도(청색약맹)

구 분	표 현	크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도엽명	대한민국전도	100	67	57	62	43	Noto Sans KR Bold
경위도	E123° N43°	10	0	0	0	100	Noto Sans KR Bold
경위도선		-	100	60	0	0	-
도곽띠		-	66	58	60	41	-
제작년월일	2021년 12월 인쇄	10	0	0	0	0	Noto Sans KR Medium
QR코드		220 x 220 (mm)	-	-	-	-	-
발행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82	47	98	56	-
			34	82	0	0	
			64	56	54	28	
축척		6~10	0	0	0	0	Noto Sans KR B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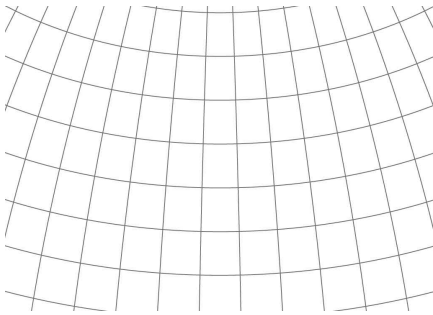
□ 대한민국주변도(1:5,000,000)

구 분	표 현	크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지도명		80	72	65	61	62	Noto Sans KR Black
			0	0	0	0	
경 위 도	E150° N20°	11	0	0	0	100	Noto Sans KR Bold
경 위 도 선		-	0	0	0	70	-
도 광 락		-	76	69	65	28	-
제 작 년 월 일	2021년 12월 인쇄	10	0	0	0	0	Noto Sans KR Medium
QR코드		220 x 220 (mm)	-	-	-	-	-
발 행 처		-	-	-	-	-	-
축 척	축척 1:5,000,000  람베르트정적방위 도법 (투영원점 북위 37.5° 동경 127°)	5~10	0	0	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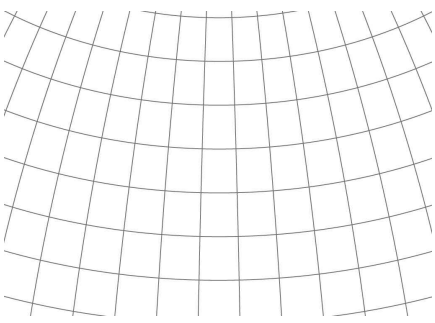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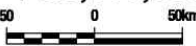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주변도(적색약맹)

구 분	표현	크기 (Pt)	색상				서체
			C	M	Y	K	
지도명	대한민국주변도	80	72	65	61	62	Noto Sans KR Black
			0	0	0	0	
경위도	E150° N20°	11	0	0	0	100	Noto Sans KR Bold
경위도선		-	0	0	0	70	-
도곽띠		-	67	60	56	40	-
제작년월일	2021년 12월 인쇄	10	0	0	0	0	Noto Sans KR Medium
QR코드		220 x 220 (mm)	-	-	-	-	-
발행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100	88	41	53	-
			3	60	0	0	
			64	56	53	28	
축척	축척 1:5,000,000  람베르트정적방위 도법 (투영원점 북위 37.5° 동경 127°)	5~10	0	0	0	100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주변도(녹색약맹)

구 분	표 현	크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지도명	대한민국주변도	80	81	75	73	50	Noto Sans KR Black
			0	0	0	0	
경 위 도	E150° N20°	11	0	0	0	100	Noto Sans KR Bold
경 위 도 선		-	0	0	0	70	-
도 광 띠		-	67	60	56	40	-
제 작 년 월 일	2021년 12월 인쇄	10	0	0	0	0	Noto Sans KR Medium
QR코드		220 x 220 (mm)	-	-	-	-	-
발 행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100	77	46	47	-
			5	85	0	0	
			55	47	47	13	
축 척	축척 1:5,000,000  람베르트정적방위 도법 (투영원점 북위 37.5° 동경 127°)	5~10	0	0	0	100	-

□ 색각이상자 대한민국주변도(청색약맹)

구 분	표 현	크기 (Pt)	색 상				서 체
			C	M	Y	K	
지도명	대한민국주변도	80	69	61	67	65	Noto Sans KR Black
			0	0	0	0	
경 위 도	E150° N20°	11	0	0	0	100	Noto Sans KR Bold
경 위 도 선		-	0	0	0	70	-
도 광 띠		-	66	58	60	41	-
제 작 년 월 일	2021년 12월 인쇄	10	0	0	0	0	Noto Sans KR Medium
QR코드		220 x 220 (mm)	-	-	-	-	-
발 행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82	47	98	56	-
			34	82	0	0	
			64	56	54	28	
축 척	축척 1:5,000,000  람베르트정적방위 도법 (투영원점 북위 37.5° 동경 127°)	5~10	0	0	0	1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u> 및 <u>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u> 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u>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u> , <u>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u> 및 <u>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 주변도")</u> 를 대상으로 ----- ----- ----- -----.
제2조(정의) ① ~ ② (생략) ③ 대한민국전도란 국토의 위치, 지세, 교통망 및 행정구역 등의 공간정보를 축소하고 정확한 정보의 판독이 용이하도록 1장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로 정책, 교육 및 관광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한 지형도이다. <u><신설></u>	제2조(정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를 말한다. ④ " <u>대한민국주변도</u> "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국의 위치, 지세, 교통망 및 행정구역 등의 공간을 축소하고 정보의 판독이 용이하도록 1장으로 제작한 지도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법적·규정관계) ① 이 규정은 「 <u>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② ~ ③ (생략)	제3조(법적·규정관계) ① ----- 「 <u>공간정보의</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치의 기준 및 좌표체계) ① 지세도와 대한민국전도에 적용하는 위치기준은 「 <u>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 제6조 및 「 <u>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좌표체계는 평면직각좌표계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u>별표 4</u> 와 같다.	제4조(위치의 기준 및 좌표체계) ① ----- ----- 「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 -- -- 「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 ② ----- ----- <u>별표 5</u> 와 -- --.
제5조(도서소속 표시방법) ① ~ ② (생략)	제5조(도서소속 표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도곽구성) ① (생략) ② 대한민국전도의 도곽구성은 최남단 <u>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포함한 내도곽</u> 을 기준으로 하고 <u>별표 5</u> 와 같다. <u><신설></u>	제6조(도곽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포함한</u> ----- -----. ③ <u>대한민국주변도의 도곽구성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포함하고 있으며 내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축소편집) ① ~ ② (생략) <u><신설></u>	제7조(축소편집)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한민국주변도는 대한민국전도 및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축척과 도식기준에 맞도록 단순화 및 기호화작업을 통하여 축소편집을 한다.</u>
제8조(표시대상) ① (생략) ② 지세도와 대한민국전도에 표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교통 나. 수부 다. 건물 라. 식생 마. 지형 사. 경계 아. 주기 <u><신설></u>	제8조(표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교통 2. 수부 3. 건물 4. 식생 5. 지형 6. 경계 7. 주기 ③ <u>대한민국주변도에 표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국가</u> 2. <u>경계</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다음 사항의 같은 색상, 기호, 주기는 서로 중복을 피해 표시하며 중복시 지도상 $\pm 0.2\text{mm}$ 이내에 같은 색상의 다른 기호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가. 구조물 나. 건물기호 다. 구조물 라. 특정지역 마. 수부의 인공물 바. 식생기호 ⑤ (생략) ⑥ (생략)	3. 도시 4. 지형 5. 교통 6. 주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 ----- ----- -----. 1. 구조물 2. 건물기호 <삭제> 3. 특정지역 4. 수부의 인공물 5. 식생기호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 ~ 제12조 (생략)	제9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도로의 취사선택) ① ~ ③ (생략) <신설>	제13조(도로의 취사선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한민국주변도는 주요 도시간 주요 도로를 표시한다.
제14조 ~ 제18조 (생략)	제14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9조(철도의 정의) ① (생략) ② 철도는 고속철도, <u>일반철도</u> , <u>특수철도로</u>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를 단선, <u>복선</u> , <u>협궤 등으로</u> 구분한다.	제19조(철도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철도는 고속철도, <u>일반철도로</u>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를 단선, <u>복선 등으로</u> 구분한다.
제20조(철도의 구분) 철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4. <u>특수철도는 광산, 산림, 공장, 시장 등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한 전용철도</u> 5. 철도역	제20조(철도의 구분)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1조(철도의 표시방법)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21조(철도의 표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대한민국주변도는 주요 도시간의 연결철도를 표시한다.</u>
제22조 ~ 제27조 (생략)	제22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교량) ① (생략) ② <u>일반교량은</u> 4호선으로 하고 양단과 접속하는 도로기호 끝과의 사이에 공간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교량의 폭을 나타내	제28조(교량)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세도의 일반교량은</u> ----- ----- ----- -----

현행	개정안
는 두 줄의 간격은 접속도로의 기호의 폭과 같이 표시한다.(지세도) ③ <u>철교는</u> 철도를 표시하는 선을 포함한 세 줄의 4호선으로 해당 기호로 표시한다.	----- -----. ③ <u>지세도의 철교는</u> ----- ----- -----.
제29조 ~ 제33조 (생략)	제29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
제34조(수부의 표현방법) ① ~ ② (생략) ③ 호수와 저수지의 수애선은 평상시 수위를 기준으로 하며, 표현은 <u>별표3에</u> 의한다.	제34조(수부의 표현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별표 4를</u> 따른다.
제35조(수부 모래·자갈·진흙 피복지) 해안 또는 하천에 분포한 모래·자갈·진흙 <u>피복지를 별표3 기호표기기준에</u> 의한다.	제35조(수부 모래·자갈·진흙 피복지) ----- ----- <u>피복지는 별표 4 기호표기기준을</u> 따른다.
제36조 (생략)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37조(댐·저수지) 육지에서는 댐을 포함하여 발전, 상수도, 농공업용수 등으로 물을 저장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말하며 실제 모습을 <u>별표 3을</u> 참조하여 해당 기호로 표시한다.	제37조(댐·저수지) ----- ----- ----- ----- --- <u>별표 4를</u> ----- -----.
제38조 ~ 제39조 (생략)	제38조 ~ 제39조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0조(건물의 표시) 건물은 공간적으로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은 제43조에 의한 특정기호로 표시하며 <u>주요건물에 대해서는</u>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나. 시청, 구청, 군청, 읍, 면	제40조(건물의 표시) ----- ----- ----- -- <u>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건물은</u> -----. 1. ----- 2. -----
제41조 ~ 제49조 (생략)	제41조 ~ 제49조 (현행과 같음)
제50조(식생의 표시방법) ① 식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u>별표3과</u>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 1. ~ 3. (생략) ② 각 구분에 의한 기호는 기호와 기호 사이의 간격은 <u>별표3에</u> 의한다. ③ (생략)	제50조(식생의 표시방법) ① ----- ----- <u>별표 4와</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u>별표 4를</u> <u>따른다.</u>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 ~ 제52조 (생략)	제51조 ~ 제52조 (현행과 같음)
제53조(등고선의 정의) 등고선 및 등심선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같은 높이의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곡선이며, 등고선은 주곡선,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육상의 지형, 등심선은 해저의 지형을 <u>별표 3과</u>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	제53조(등고선의 정의) ----- ----- ----- ----- ----- ----- ----- <u>별표 4와</u> -----.

현행	개정안
제54조(등고선의 표현) ① (생략)	제54조(등고선의 표현)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한민국전도에서 표현되는 등고선은 100m, 200m, 500m, 1,000m, 1,500m, 2,000m, 2,500m로 구분하고, 등심선은 간조시의 최저 해수면을 기준한 것으로 20m, 50m, 100m, 200m, 1,000m, 2,000m로 구분하여 색의 등급에 의하여 수심을 표현한다. <신설>	② ----- 육지의 색상은 0m, 100m, 500m, 1,000m, 1,500m, 1,500m 이상으로 구분하고, 해저의 색상은 간조시의 최저 해수면을 기준한 것으로 0m, 50m, 100m, 200m, 500m, 1,000m, 2,000m, 3,000m, 3,000m 이하로 구분하여 -----. ③ 대한민국주변도에서 표현되는 육지의 색상은 높이에 따라 10단계(해면하 지역 및 0~150m, 150~500m, 500~800m, 800~1,000m, 1,000~1,300m, 1,300~1,700m, 1,700~2,000m, 2,000~2,500m, 2,500~3,000m, 3,000m 이상)로 구분하되, 저지대는 녹색계통으로 중·고지대는 갈색계통으로 구분하는 등 음영기복을 나타내도록 한다. 해저의 색상은 8단계(0~500m, 500~1,000m, 1,000~2,000m, 2,000~3,000m, 3,000~4,000m, 4,000~5,000m, 5,000~6,000m, 6,000m 이하)로 구분하되, 육지에 가까운 수심이 낮은 곳은 연한 청색으로 수심이 깊은 곳은

현행	개정안
③ <u>지세도와 대한민국전도에서 지표면의 고도에 따른 음영기복의 색상은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표현한다.</u>	<u>질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수심의 차이에 따라 색상의 농도를 조절하여 표시한다.</u> ④ <u>지표면의 고도에 따른</u> ----- ----- ----- <u>별표 4와</u> ----- -----.
제55조 ~ 제57조 (생략)	제55조 ~ 제57조 (현행과 같음)
제58조(경계의 표시) <u>경계는 여러 등급의 경계가 중복될 경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경계 기호로 표시하고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의 행정경계와 도서 간의 해상경계, 도서소속 표시를 포함한다. 단, 대한민국전도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의 경계만 표시한다.</u> <u><신 설></u> <u><신 설></u>	제58조(경계의 표시) ① <u>지세도의 경계는 여러 등급의 경계가 중복될 경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경계기호로 표시하고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의 행정경계와 도서 간의 해상경계, 도서소속 표시, 국가경계를 포함한다.</u> ② <u>대한민국전도의 경계는 국가경계,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의 경계를 표시하며 우리나라 국가경계는 헌법에 의한다.</u> ③ <u>대한민국주변도의 경계는 국가경계, 주·성·도경계를 표시하며, 분쟁지역의 경계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59조 ~ 제60조 (생략)	제59조 ~ 제60조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제61조(주기의 표기원칙) ① 지명의 로마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외국의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표기한다.
제61조(글자체) 한글과 영문, 숫자 등 지도에 사용되는 서체는 별표 2에 의한다.	제62조(글자체) ----- ----- 별표 3을 따른다.
제62조(글자의 종류)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영문자, 숫자로서 표기한다. 지세도에는 한글은 지명 및 기타 고유명칭에 사용하고 숫자는 삼각점, 표고점, 등고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하며, 대한민국전도에서는 한글은 지명 및 기타 고유명칭에 사용하고 숫자는 표고점, 등고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한다.	제63조(글자의 종류) ----- ----- ----- . 지세도 및 대한민국 전도에는 한글은 지명 및 기타 고유명칭에 사용하고 숫자는 삼각점, 표고점, 등고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하며, 대한민국주변도에는 한글은 국가명, 지명 및 기타 고유명칭에 사용하고 숫자는 산높이, 항로 등에 사용한다.
제63조 (생략)	제64조 (현행 제63조와 같음)
제64조 (생략)	제65조 (현행 제64조와 같음)
제65조 (생략)	제66조 (현행 제65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66조 (생략)	제67조 (현행 제66조와 같음)
제67조(주기의 취사선택) 행정구역 고유 명칭은 모두 표기하고 주거지, 하천, 호수, 저수지, 바다, 만, 산, 도서, 도로 및 철도(역 포함) 등의 명칭은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한글로 표시한다. 단,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명칭은 용도상의 필요성 및 표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신설>	제68조(주기의 취사선택) ① 지세도 및 대한민국전도에 표기되는 행정구역 고유 명칭은 모두 표기하고, ----- ----- ----- ----- ----- -----. ② 대한민국주변도에 표시할 국가명, 주요 도시명, 해, 강, 호, 만, 반도, 섬 명칭 등 자연 및 인공 지형지물의 대상은 인지도, 가시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제68조(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 ① 주기는 다른 기호 등과 같이 지형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위치에 <u>별표 2에 의한다.</u> ② (생략)	제69조(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 ① ----- ----- ----- ----- ----- <u>별표 2에 따라 표기한다.</u> ② (현행 제68조 제2항과 같음)
제69조 (생략)	제70조 (현행 제69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u>제70조</u>(집단물체의 주기)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도상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그 내부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u>별표 2</u>에 의한다.	<u>제71조</u>(집단물체의 주기) ① (현행 제70조 제1항과 같음) ② (현행 제70조 제2항과 같음) ③ 지도상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그 내부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u>별표 2</u>를 따른다.
<u>제71조</u> (생략)	<u>제72조</u> (현행 제71조와 같음)
<u>제72조</u> (생략)	<u>제73조</u> (현행 제72조와 같음)
<u>제73조</u>(주기표기기준) <u>별표의</u> 주기 표기기준은 주기의 대상물과 그에 대한 글자의 크기 및 서체 등의 구별원칙을 표시한 것으로 이 절에 있어서 특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u>별표 2</u>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u>제74조</u>(주기표기기준) <u>별표 3의</u> ----- ----- ----- ----- ----- <u>별표 3</u> ----- -----.
<u>제74조</u>(도로) ① 도로에 있어서는 고속도로명, 유명한 도로명, 도로번호, 고개터널, 교량 등을 표기한다. 사용되는 글자체와 급수는 <u>별표 2</u>에 의한다. ② 도로명 및 건설 중인 도로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u>일반원칙</u>에 의한다.	<u>제75조</u>(도로) ① ----- ----- ----- ----- <u>별표 3</u>을 따른다. ② ----- ----- <u>일반원칙</u>을 따른다.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고개, 터널, 교량 등의 주기는 그 형태와 크기에 따라 용도상 필요한 것만을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u>일반원칙에 의하여</u> 표기한다.	③ (현행 제74조 제3항과 같음) ④ ----- ----- ----- ----- <u>일반원칙에 따라</u> -----.
<u>제75조(철도)</u> ① (생략) ② 철도명 및 건설 중 철도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u>일반원칙에 의한다.</u> ③ (생략) ④ 철도터널 및 교량은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하고 표기방법은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u>일반원칙에 의한다.</u>	<u>제76조(철도)</u> ① (현행 제75조 제1항과 같음) ② ----- ----- <u>일반원칙을 따른다.</u> ③ (현행 제75조 제3항과 같음) ④ ----- ----- ----- ----- <u>일반원칙을 따른다.</u>
<u>제76조</u> (생략)	<u>제77조</u> (현행 제76조와 같음)
<u>제77조</u>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리·마을명 주기) 표현되는 모든주기는 <u>별표 2</u> 주기표기기준에 따른다.	<u>제78조</u>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리·마을명 주기) ----- ----- <u>별표 3</u> ----- -----.
<u>제78조</u> (기준점) 삼각점 및 표고점 수치는 <u>별표 2</u> 주기표기기준에	<u>제79조</u> (기준점) ----- ----- <u>별표 3</u> -----

현행	개정안
따른다.	-----.
제79조(등고선 수치) ① ~ ② (생략) ③ 수치를 표기하는 위치는 등고선을 단절하고 그 사이에 수치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u>별표 2</u> 와 같이 주기한다.	제80조(등고선 수치) ① ~ ② (현행 제79조와 같음) ③ ----- ----- ----- ----- <u>별표 3</u> 과 ----- --.
제80조(특정지역) 특정지역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국립공원과 같이 넓은 지역은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며, 글자 크기는 <u>별표 2</u> 에 의한다.	제81조(특정지역) ----- ----- ----- ----- ----- <u>별표 3</u> 을 따른다.
제81조(하천) ① (생략) ② 하천의 명칭은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u>별표 2</u> 에 의한다. 다만, 큰 하천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어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은 경우 상태에 따라 적절히 글자의 크기를 줄인다. ③ (생략)	제82조(하천) ① (현행 제81조 제1항과 같음) ② ----- ----- --- <u>별표 3</u> 을 따른다. ----- ----- ----- ----- -----.
	③ (현행 제81조 제3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제82조</u>(호수·저수지) ① (생략) ② 호수 및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호수 및 못의 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u>일반원칙에 의한다.</u> ③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u>별표 2에 의하며</u>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④ (생략)	<u>제83조</u>(호수·저수지) ① (현행 제82조 제1항과 같음) ② ----- ----- ----- ----- ----- <u>일반원칙을 따른다.</u> ③ ----- <u>별표 3을 따르며</u> ----- ----- -----. ④ (현행 제82조 제4항과 같음)
<u>제83조</u>(바다, 항만, 해협 등) ① ~ ② (생략) ③ 글자는 <u>별표 2와</u> 같이 하고 글자의 크기는 아래와 같으나 혹은 주기물의 지도상 면적이 협소한 경우 줄인다.	<u>제84조</u>(바다, 항만, 해협 등) ① ~ ② (현행 제83조와 같음) ③ ----- <u>별표 3과</u> ----- ----- ----- -----.
<u>제84조</u>(갯·곶) 인지도가 높은 곳에 대하여 표기하며 대상물의 상태에 따라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며 글자는 <u>별표 2에 의한다.</u>	<u>제85조</u>(곶·포) ----- ----- ----- ----- ----- <u>별표 3을 따른다.</u>

현행	개정안
<u>제85조</u>(섬 및 군도) ① 섬의 명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표기하고 그 섬 위에 있는 주거지의 명칭과 섬의 명칭이 동일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기 방법은 지도상 면적에 따라 물체표면, 집단물체 또는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글자는 <u>별표 2</u>에 의한다. ② 군도, 열도 등의 명칭은 전부 표기하고 섬의 상태에 따라 집단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의 크기는 <u>별표 2</u>에 의한다.	<u>제86조</u>(섬 및 군도) ① ----- ----- ----- ----- ----- ----- ----- -- <u>별표 3</u>을 따른다. ② ----- ----- ----- ----- --- <u>별표 3</u>을 따른다.
<u>제86조</u>(산, 고개, 계곡) ① 산의 명칭은 그 산 정상에 집단물체 또는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최소 간격으로 표기하고 글자는 기울임 20°로 하며 그 표고 및 인지도에 따라 <u>별표 2</u>와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 ② 고개의 명칭은 도로표시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u>별표 2</u>에 의한다.	<u>제87조</u>(산, 고개, 계곡) ① ----- ----- ----- ----- ----- ----- <u>별표 3</u>과 ----- -----. ② ----- ----- ----- --- <u>별표 3</u>을 따른다.
<u>제87조</u> (자연지역) ① (생략)	<u>제88조</u> (자연지역) ① (현행 제87조와

현행	개정안
② 자연지역(산지, 평지)에 사용 되는 글자는 <u>별표 2</u> 에 의한다.	같음) ② ----- ----- <u>별표 3</u> 을 따른다.
<u>제88조</u> (생략)	<u>제89조</u> (현행 제88조와 같음)
<u>제89조</u> (생략)	<u>제90조</u> (현행 제89조와 같음)
<u>제90조</u> (생략)	<u>제91조</u> (현행 제90조와 같음)
<u>제91조</u> (생략)	<u>제92조</u> (현행 제91조와 같음)
<u>제92조</u> (생략)	<u>제93조</u> (현행 제92조와 같음)
<u>제93조</u> (생략)	<u>제94조</u> (현행 제93조와 같음)
<u>제94조</u> (생략)	<u>제95조</u> (현행 제94조와 같음)
<u>제95조</u> (생략)	<u>제96조</u> (현행 제95조와 같음)
<u>제96조</u> (생략)	<u>제97조</u> (현행 제96조와 같음)
<u>제97조</u> (특정지역의 취사선택) 특정 지역의 선별은 다음과 같다. ① 가시성이 높은 것 ② 학술적으로 저명한 것 ③ 용도상 필요한 것 ④ 인지도가 높은 것	<u>제98조</u> (특정지역의 취사선택) --- -----. 1. ----- 2. ----- 3. ----- 4. -----
<u>제98조</u> (생략)	<u>제99조</u> (현행 제98조와 같음)
<u>제99조</u> (생략)	<u>제100조</u> (현행 제99조와 같음)
<u>제100조</u> (난외사항의 정의) <u>난외사</u>	<u>제101조</u> (난외사항의 정의) ① <u>난외</u>

현행	개정안
<u>항은 지도 도곽의 표시와 지도 구성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말하며, 도곽 주위에 표시하여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u> <u><신 설></u> <u><신 설></u>	<u>사항은 별표 5에 따라 지도 도곽의 표시와 지도 구성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말한다.</u> <u>② 지세도는 도곽 주위에 표시하고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u> <u>③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는 도곽 내에 표시하고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u>
<u>제101조(난외사항의 구성요소) ① (생략)</u> <u>②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u> <u><지세도 난외사항></u> <u>가. 도엽명</u> <u>나. 도엽번호</u> <u>다. 도곽(내도곽, 외도곽)</u> <u>라. 인접도엽표</u> <u>마. 행정구역도표</u> <u>바. 위치도</u> <u>사. 도로행선지명</u> <u>아. 철도행선지명</u> <u>자. 지리좌표</u> <u>차. 범례</u> <u>카. 축척</u>	<u>제102조(난외사항의 구성요소) ① (현행 제101조 제1항과 같음)</u> <u>② 지세도의 난외사항으로 -----</u> <u>----- 각호와 같다.</u> <u>1. ----</u> <u>2. -----</u> <u>3. -----</u> <u>4. -----</u> <u>5. -----</u> <u>6. -----</u> <u>7. -----</u> <u>8. -----</u> <u>9. -----</u> <u>10. ----</u> <u>11. ----</u>

현행	개정안
타.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 파.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 년월 하. 기타 필요한 사항 <신 설>	12. ----- 13. ----- -- 14. ----- ③ 대한민국전도의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도엽명 2. 도곽(내도곽, 외도곽) 3. 지리좌표 4. 범례 5. 축척 6.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 7.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 월 8.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대한민국주변도의 난외사항으 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엽명 2. 도곽(내도곽, 외도곽) 3. 지리좌표 4. 범례 5. 축척 6.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 월 7. 기타 필요한 사항
<신 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난외사항의 표시방법) 난외사항의 표시방법은 제3절과 별표 2에 의거하여 표시한다.	제103조(난외사항의 표시방법) --- ----- 별표 5에 따라 -----.
제103조(도곽) ① ~ ② (생략) ③ <u>외도곽은 내도곽의 외곽에 10mm 간격으로 내도곽과 평행하는 한 줄의 3호선과 또 이 선에서 다시 1.0mm 외곽에 그은 1.0mm의 굵은 선으로서 형성된다.</u>	제104조(도곽) ① ~ ② (현행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u>지세도의 외도곽은 ----- ----- ----- ----- -- 선으로 표현하고,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외도곽 띄는 한국전통 문양으로 한다.</u>
제104조(지리좌표의 주기) ① 지세도는 내도곽의 네 개의 모서리와 각 변에는 매30'마다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는 매 1°마다 지리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에 의하여 수치를 표기한다. ② (생략)	제105조(지리좌표의 주기) ① --- ----- ----- ----- ----- 기입하며, 대한민국주변도는 매 5°마다 지리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5에 따라 수치를 표기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도로 행선지명) ① 주요도로(고속, 국도, 지방도)가 내도곽에 의하여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에 행선지명과 <u>거리</u>	제106조(도로 행선지명) ① ----- ----- ----- <u>거리</u>

현행	개정안
를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한다. ② ~ ③ (생략)	는 별표 5를 따른다. ----- ----- -----. ② ~ ③ (현행 제105조와 같음)
제106조(철도의 행선지명) 철도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거리를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여러 철도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한다.	제107조(철도의 행선지명) 지세도의 철도기호가 ----- ----- ----- 별표 5에 따라 표시한다. ----- ----- -----.
제107조(도엽번호) ① 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생략)	제108조(도엽번호) ① 지세도의 도엽번호는 ----- ----- 별표 5를 따른다. ② (현행 제107조와 같음)
제108조(도엽명) ① 도엽명은 지세도의 경우 외도곽 중앙 상부와 외도곽 우측 상부에 한글로 표시하고, 대한민국전도의 경우 도곽 내부 좌측상단에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한다. ② 외도곽 중앙 상부의 도엽명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글자 간격은 두 자일 때에는 글자 크기의 두	제109조(도엽명) ① ----- ----- 표시하고, 대한민국전도와 대한민국주변도의 경우 도곽 내부 좌측상단에 표시한다. ② ----- 별표 5와 ----- -----

현행	개정안
배로, 세 자일 때에는 글자 크기의 간격을 둔다. ③ 외도곽 우측 상부의 도엽명은 중앙 상부의 도엽명과 같은 글자체로서 <u>별표 2</u>와 같이 (영문자)를 도엽명에 함께 병기한다.	----- -----. ③ ----- ----- ---- <u>별표 5</u>와 ----- -----.
<u>제109조(색인도표)</u> 색인도표는 가로 65mm × 세로 95mm 직사각형 안에 <u>대한민국을 전체를</u> 26도엽으로 구성하여 해당하는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외도곽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u>제110조(색인도표)</u> <u>지세도의 색인도표</u>는 ----- --- <u>대한민국 전체를</u> ----- ----- ----- -----.
<u>제110조(행정구역표)</u> ① <u>행정구역표</u>는 색인도표의 바로 하단에 두며 해당 도엽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개요를 표시한다. ② 행정구역표는 가로 65mm × 세로 45mm 직사각형 안에 해안선, 주요하천, 호수와 행정경계를 표시하고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의 기호와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u>별표 2</u>에 의한다.	<u>제111조(행정구역표)</u> ① <u>지세도의 행정구역표</u>는 ----- ----- -----. ② ----- ----- ----- ----- ----- ----- <u>별표 5</u>를 따른다.
<u>제111조(범례)</u> 범례는 지세도에서는 가로 65mm × 세로 155mm 직사각형으로 외도곽 좌측 하단에	<u>제112조(범례)</u> ----- ----- ----- <u>외도곽 우측에</u>

현행	개정안
표시하고 <u>대한민국전도는 가로 62mm × 세로 132mm</u> 내도곽내 우측 하단에 표시하며, 전부 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도엽 내용과 관계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u>별표 2에 의한다.</u>	----- <u>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 주변도는</u> ----- ----- ----- ----- ----- <u>별표 5를 따른다.</u>
<u>제112조</u> (생략)	<u>제113조</u> (현행 제112조와 같음)
<u>제113조(안내문)</u> <u>안내문은 가로 65mm × 세로 55mm 직사각형으로 범례 하단에 표시하고 본 지도의 수정사항 발생시 연락처 및 주의사항(국·영문)이 표현되어 있다.</u> 자세한 표시방법은 <u>별표 2에 의한다.</u>	<u>제114조(안내문)</u> <u>지세도의 안내문은</u> ----- ----- ----- <u>발생 시의 연락처와 주의사항(국·영문)을 포함한다.</u> 자세한 표시방법은 <u>별표 5를 따른다.</u>
<u>제114조(편집 및 수정년도, 인쇄년도)</u> ① 편집년도란 해당도엽을 최초로 제작한 시기, 수정년도란 해당도엽을 최초 제작한 이후 부분적으로 수정한 시기를 말하며, 인쇄년도는 해당도엽을 제작 후 종이로 인쇄한 시기를 말한다. <u>표현은 외도곽 좌측 하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u> <u><신 설></u>	<u>제115조(편집 및 수정년도, 인쇄년도)</u> ① ----- ----- ----- ----- ----- ----- ② <u>지세도의 편집 및 수정년도, 인쇄</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년도는 외도곽 우측 하부에 표시한다.</u> ③ <u>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는 최종 인쇄년도만 표기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도 5를 따른다.</u>
<u>제115조(축척) 지세도 및 대한민국전도의 축척은 외도곽 우측 하부에 km단위로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u>	<u>제116조(축척) 지세도의 축척은 외도곽 우측 하부에 km단위로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축척은 범례에 포함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u>
<u>제116조(저작권 소유, 발행자)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외도곽 우측 하부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u>	<u>제117조(저작권 소유, 발행자) 지세도의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외도곽 우측 하부에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저작권 소유, 발행자는 범례에 포함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u>
<u>제117조(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지도에 이해에 필요한 사항(측량의 기준, 평균해수면, 투영방법, 도곽수치, 원점가수, 등고선간격 등)은 도곽 우측하단에 표시한다.</u>	<u>제118조(기타 필요한 사항) -----</u> <u>-----</u> <u>-----</u> <u>--- 지세도는 외도곽 우측하단에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는 범례에 포함한다.</u>

현행	개정안
	<u>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u>
제118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u>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재검토기한) ----- ----- ----- ----- <u>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u> ----- ----- ----- -----.